1권

헌장 및 규정

1장 -	헌	장	7
1.1형	화. 1	명칭	7
1.2형	항: 7	현황	7
1.3	화: J	목적	7
1.4형	화: :	회원	7
1.5형	항: :	가입	8
1.69	화: <u>:</u>	조직	9
	-	총회	
	-	회장	
	-	부회장	
		· 사무총장	
		· 자무 감사 위원회	
		·	
		· 집행 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 징계 및 윤리 위원회	
		· 정계 및 판디 귀현외	
		· 상임 위원회	
		· 상임 위원회 회부 조건	
		· 상임 위원회 절차	
		· 선거 위원회	
		특별 목적 위원회	
		명예 임원	
		· 평위원회	
		· 상	
		회비와 벌금	
		세계양궁연맹 대회 수입	
		회계 감사	
		· 엠블럼, 기, 팡파르	
		: 사무국과 문서보관	
		: 공식 언어	
		- 공식 출간물	
		· 스포츠 중재재판소	
		. 책임	
		: 회원 탈퇴	
		세계양궁연맹 서명	
		세계양궁연맹 해산	
		데이터 보호 및 참가 동의	
		수와 팀 임원에 대한 자격 규정	
		입회	
		자격 규정	
	-	의료 조항	
		국가대표팀	
		총회 절차	
		l차	
2항:	총	회 장소	24
	_	·석	
4항:	총	·회 문서	24
5항:	안	l건	24
6항:	총	회 중 절차	24
		윤리 및 행동 강령	
		위	
2항:	청	l렴성	29
3항:	자	원	29
4항:	입	후보	29
5항:	국	가와의 관계	29
6항:	기	밀유지	29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절차	
1항:	일	l반 원칙	31

23	항: 법적 조치 시작	31
3	항: 절차	31
	항: 결의와 권고	
	항: 징계	
	4 - 심판위원회 조직과 절차	
	항: 심판 조직	
	항: 국내 심판(NJs)	
	항: 대륙 심판(CI)	
	항: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후보(세계양궁연맹-IJCs)	
	항: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세계양궁연맹-JJs)	
	항: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세계양궁연맹-YJs)	
	항: 세계양궁연맹 심판 인증(세계양궁연맹-IJS, 세계양궁연맹-IJCs, 세계양궁연맹-YJs)	
	항: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후보(세계양궁연맹-IJCs)의 최초 인증	
	항: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 인증	
)항: 세계양궁연맹 심판 갱신	
1	항: 경기 규정과 심판 절차 비준수 항: 세계양궁연맹 심판 인증 철회	36
	양한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승급	
	t항: 특별 조건	
	.항: 대회 심판위원회 구성 항: 보고	
	7항: 심판 은퇴	
	/영: 점인 근되 양항: 통신(Correspondence)	
	58. 동전(Correspondence)	
	5- 세계용수단용 용배 사람	
	⁶ - 올림픽 헌장	
	5. S.	
	o항: 올림픽 헌장 규정 40의 자격 규정	
	항: 규정 40에 대한 부칙	
	항: 올림픽 헌장 규정 50의 광고, 시연, 선전	
	항: 규정 50에 대한 부칙	
	5+.	
	5ł. O	
	5). 0	
	5.	
1()항:	42
1	항:	42
12	항:	42
13	항: 양궁 장비의 식별 표시 면제조건	42
부록	7 - 세계양궁연맹 팡파르	42
13	51. O	42
부록	8 - 선수위원회 선거 절차	43
	항: 위원 선출	
23	항: 추천	43
	항: 투표	
부록	9 - 도박과 부패방지	44
	항: 서문	
23	항: 적용 및 범위	44
	항: 규정 위반	
	항: 입증 책임 및 기준	
	항: 위반행위 조사	
	항: 기소 통지문 발행	
	항: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	
	항: 징계	
	항: 항소권	
	항: 결의 인식	
	'항: 제한 규정	
	항: 수정과 해석	
13	3항: 정의	48

서문

본 규정판은 하기 일자에 승인 및 시행된 규정 및 부칙 일체를 포함한다. 본 규정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시행 중인 신규 해석의 목록은 세계양궁연맹 웹사이트(www.archer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규정판은 이전의 모든 규정판을 대체한다.

1961, 1963, 1965, 1967, 1969, 1971, 1972, 1973, 1975, 1976, 1977, 1979, 1980,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세계양궁연맹 총회에서 승인된 개정안을 포함하는 1959년 세계양궁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규정.

권리:

본 규정서는 세계양궁연맹의 허가 없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일부 또는 전부를 재제작할 수 없다.

헌장:

본 헌장 및 규정서는 6권으로 분리된다.

- 1권 헌장 및 규정
- 2권 대회
- 3권 표적양궁
- 4권 필드 양궁 및 3D 양궁 규정
- 5권 기타 양궁 라운드 및 스키 양궁
- 6권 도핑 방지 규정

구성 규정:

헌장 및 규정에 다음의 구성 규정이 적용된다.

- 1. 공식적인 규정본은 영어로 작성한다. 기타 언어로 발행된 헌장 및 규정(Constitution & Rules)은 회원국(회원국의 양궁 협회)과 자원자 공익단체(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세계양궁연맹은 세계양궁연맹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모든 번역문을 포함한 번역의 완전성 또는 정확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영문본과 다른 번역본이 상충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하며 권위가 있다.
- 2. 세계양궁연맹은 오류를 수정하고 수시로 헌장 및 규정을 수정할 권한을 보유한다.
- 3. 헌장 및 규정은 수시로 세계양궁연맹이 게시하는 공식 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실행 중인 제반의 신규 해석 목록은 세계양궁연맹 웹사이트(www.archer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헌장 및 규정에서 사용되는 남성에 대한 모든 표현에는 여성도 포함된다.
- 5. 본 규정서에 사용된 대로 "할 수 없다", "해야 한다" 혹은 "한다"는 말은 의무적 조건으로 해석된다.
- 6. 과반수를 결정하는 경우, 단순 과반수는 항상 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된다. 예를 들어 67의 단순 과반수는 34이며, 67의 2/3는 45이 다(67/3x2=44.66, 45로 반올림).
- 7. "포함"이라는 말 사용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을 의미한다
- 8. 모든 부록은 세칙으로 적용 된다.

정의:

(도핑 금지 규정에 적용 가능한 정의는 6권 35.20항 참조.)

"선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참가하도록 선발된 선수 혹은 참가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선수 지원 인력"은 코치, 훈련자, 매니저, 선수 대표, 대리인, 팀 스태프 멤버, 임원, 의료 인력 또는 준의료 활동 인력, 가족 또는 기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선수의 회원국이 고용하거나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혜택"은 금전 또는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 혹은 제공(관련 행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지지 계약, 스폰서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상금 및(또는) 계약금 지불 제외).

"도박"은 돈내기 또는 기타 유형의 금전 투기를 의미한다.

"도박 행위"는 도박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판돈을 놓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 및 러닝 오즈 베트, 토털라이제이터(totalisator) 게임 및 토토 게임, 온라인 라이브 베팅, 베팅 거래, 스프레드 베팅, 및 기타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임 등 스포츠 베팅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장색"은 나무껍질이나 나뭇가지 또는 이파리 등의 자연 소재 위장 패턴을 색상 유무에 상관 없이 구현하여 자연 환경에 조화를 이루어 경기나 군인 또는 기타 타인의 가시성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무작위 또는 상표 등록되거나 기타 디지털 디자인을 말한다. 자연 환경에 조화되어 가시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의 위장색 패턴에 가령 핑크나 청색, 밝은 노란색 등의 비전통적인 위장색을 사용한 것도 위장색으로 간주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 / 49

"CAS"는 스위스 로잔(Lausanne)에 소재하는 스포츠 중재재판소를 의미한다.

"대회"는 한 운영 기관(예: 세계 선수권대회)의 주최 하에 1일 이상 진행되는 경기 혹은 연속되는 경기를 의미한다.

"대회 규정"은 다음 중 하나를 규정하는 법이다.

- 대회에서 사용되는 장비.
- 대회 라운드에서 사용되는 절차.
- 대회 중 선수 또는 선수들이 하는 행동.
- 대회 중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기타 행동.

"배포"는 출간물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을 지칭한다.

- 우편
- 팩스
- 세계양궁연맹 웹사이트 게시 후, 통지문 이메일 발송
- "경기"는 싱글, 레이스, 매치 또는 컨테스트를 의미한다.

"내부 정보"는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 중 본인의 지위로 인해 습득하는 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경쟁 선수, 조건, 전략적인 고려 사항 혹은 기타 대회 또는 경기의 양상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대회 또는 경기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공개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대중의 구성원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공문서 혹은 이미 게시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 경기"는 다음으로 정의한다.

- 세계 및 대륙 타이틀 대회
-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타이틀 대회
- 세계 랭킹 대회
-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예선 경기(대륙 예선 경기(토너먼트))
- 주요 경기 조직의 양궁 경기.
- 기타 세계양궁연맹이 운영 기관으로 있거나 기술 임원을 임명하는 경기.
- "심판 참관인"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을 의미한다.
- "식별"은 이름, 직위, 상표, 로고 혹은 제조업자의 특징적 기호를 통상적으로 아이템 당 최대 1회에 한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주요 경기 조직위원회"는 모든 대륙 경기, 지역 경기 혹은 기타 국제 경기를 주관하는 단체 역할을 하는 국제 복합 스포츠 조직을 의미한다. "기계식"은 서로 연관된 최소 1개 부분의 분리된 움직임으로 인해 보우 스트링 릴리스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협력하여 작동할 수 있는 개별적 인 부품 또는 연합된 스프링 부품 등 복수의 상호작용하는 부품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NOC"는 국가 올림픽 위원회를 의미한다.

"실외"는 경기 중에 선수가 다음 세 요인 중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 장소를 의미한다. (i)비, (ii) 바람, (iii) 태양.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 명확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i) 창을 통해 밖으로 슈팅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치지도 않으며 바람도 불지 않기 때문에(0개 요소 해당) 실외 경기가 아니다. (ii) 지붕 아래서 하는 슈팅은 바람만 적용되므로 실외 경기가 아니다(비가 오지도 않고 햇빛도 비치지 않음) (1개 요소 해당). (iii) 지붕이 닫힌 스타디움에서 하는 슈팅은 바람도 없고 햇빛도 비치지 않기 때문에 실외 경기가 아니다(0개 요소 해당). (iv) 지붕이 열리고 벽으로 둘러싸인 스타디움에서 하는 슈팅은 실외 경기이다(바람은 없지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친다) (2개 요소 해당). 단, 선수가 오버행 아래에서 슈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0개 요소 해당). (v)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는(돛, 벽) 선수의 슈팅은 실외 경기이다(바람은 없지만 비와 햇빛은 있다) (2개 요소 해당). (vi) 스타디움에서 하는 슈팅일지라도 선수가 비와 햇빛(그리고 비의 가능성)의 영향을 받는다면 실외 경기이다 (2개 요소 해당). 위의 경우 바람을 차단하는 벽이나 돛이 경기장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참가자"는 선수, 선수 지원 인력, 심판, 레퍼리(referee), 대표, 위원, 상소심판원, 대회 임원, 회원국 팀 또는 대표 회원, 및 기타 인증된 자를 의미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 / 49

- "개인"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협회, 및 파트너십을 포함한다(별도의 법인격 여부에 상관없이).
- "발행물"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판독 가능한 전자적 형태로 된 인쇄물이나 문서라고 정의한다.
- "징계"는 징계 및 윤리위원회가 본 규정서에 따라 부과할 권리가 있는 징계를 의미한다.
- "위반"은 본 규정서의 위반을 의미한다.
- "세계양궁연맹 패밀리(World Archery Family)"은 다음이라고 정의한다.
 - 세계양궁연맹 회원국과 그들의 임원.
 - 운영위, 명예 임원, 징계 및 윤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회 및 특별 목적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세계양궁연맹 임원.
 - 세계양궁연맹 심판.
 - 세계양궁연맹이 보수를 지불하는 자를 포함한 세계양궁연맹 스태프.
 - 세계양궁연맹 국제 대회가 인정한 자.
 - 세계양궁연맹 국제 대회 후보 개최 도시.
 - 세계양궁연맹 국제 대회의 조직 위원회.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5 / 49

1권

헌장 및 규정

본 규정판은 하기 일자에 승인되고 시행된 모든 현행 규정과 부칙을 포함한다. 본 규정판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시행되는 모든 해석의 리스트는 세계양궁연맹 웹사이트(www.archery.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판은 이전의 모든 규정판을 대체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6 / 49

1장

헌장

1.1. 명칭

1.1.1. 본 연맹의 명칭은 세계양궁연맹이고 축약어는 WA이다.

1.2. 현황

1.2.1. 세계양궁연맹은 스위스 민법에 의거한 비영리 협회이다.

1.3. 목적

- 1.3.1. 세계양궁연맹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올림픽 원칙에 따라 양궁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한다.
 - 세계양궁연맹의 목표를 정하고 촉진한다.
 - 세계양궁연맹의 규정을 구축하고 해석한다.
 - 총회가 모든 종목에서 정하는 세계 선수권대회의 조직을 구성한다.
 - 다음의 사항을 확정하고 유지한다.
 - 이 세계 기록
 - · 올림픽 기록, 장애인 올림픽 기록
 - 다음에서 획득한 기록을 유지한다.
 - 이 세계 기록 선수권대회와 세계양궁연맹 국제 대회
 - 올림픽
 - 장애인 올림픽
 - 모든 형태의 대회 조작 및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핑 근절에 중대하게 기여하고, 오점 없는 선수와 스포츠의 청렴성을 보호한다.
 - 연맹의 활동이나 결정에 있어 인종, 피부색, 성별, 성지향,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견해,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지,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 어떠한 유형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 세계양궁연맹에 소속된 모든 이는 차별을 금지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를 위해 안전하고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 IOC의 선수의 권리 및 책임 헌장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1.4. 회원

- 1.4.1. 세계양궁연맹의 회원은 다음을 말한다.
 - 회원국
 - 대륙 연맹
 - 준 국제 연맹
 - 준회원국
- 1.4.2. 회원국은 각 국가 또는 영토 당 한 개의 국가 양궁 협회이다.
 - 1.4.2.1. 회원국의 명칭으로 각 국가 또는 영토를 식별할 수 있다.
 - 1.4.2.2. 회원국과 대륙 연맹은 세계양궁연맹을 세계양궁의 목적을 대표하는 국제 양궁 연맹으로 인정한다. 회원국은 회원국 규정의 구속을 받으며 세계양궁연맹의 사안에 대해 관할 기관에 따르고, 그 목표에 동의한다. 회원국, 회원국의 임원과 선수는 윤리 및 행동 강령을 포함하여 헌장 및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 1.4.2.3. 회원국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내부 문제를 관리하고 제 3자가 회원국 운영을 방해하게 하지 않는다. 회원국은 자치 체제를 유지하며 세계양궁연맹의 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회원국의 헌신을 방해하는 모든 정치적, 종교적, 재정적 압력에 저항한다. 모든 종류의 외부 개입 또는 시도에 대해 세계양궁연맹에 보고해야 한다. 회원국은 회원국이 제 3자에 대해 갖는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선거 또는 중간 임명시스템을 위한 조건을 정해야 한다. 특히 회원국은 그러한 협회를 지배하는 단체의 구성원을 정부 및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7 / 49

기타 공공 당국이 임명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본 조항은 예를 들어, 투표권을 가진 회원은 회원국의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총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임명되어야 하지만, 반면에 회원국의 운영 위원회 내에서 투표권 없이 정부 대표가 제한된 수의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회원국이 결의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결의, 선거 및 단체의 회원국은 세계양궁연맹의 인증을 받을 수 없으며 중지될 수 있다.

1.4.2.4. 회원국은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양궁 활동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회원국은 총회에 의해 퇴출된다.

1.4.2.4.1. 정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 남녀 양성으로 구성된 표적양궁(target archery) 국내 선수권대회를 최소 1년에 한번 구성한다.
- 최소 30명의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 선수를 보유한다. 인구가 100만명 미만이거나 최근 올림피아드에서 양궁을 시작한 국가의 경우,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원은 10명이다. 인구가 20만명 미만인 국가의 경우, 이 최소한의 숫자는 5명이다.
- 회원국 활동을 4년 마다 세계양궁연맹에 보고한다.
- 세계양궁연맹의 반도핑 규정과 세계반도핑규정을 준수하는 반도핑 규정을 갖는다.
- 회원국은 회비를 완불해야 하고 양호한 관리 업무를 실행해야 한다.
- 1.4.2.4.2. 회원국이 정 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경고문이 발송되며, 다음 총회까지 교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퇴출 권고가 내려진다.
- 1.4.3. 준국제 연맹은 세계양궁연맹을 세계양궁연맹의 문제를 국제적으로 대변하는 국제 연맹으로 인정한다. 준국제 연맹은 세계양궁연맹과 협력하는데 대한 합의의 구속을 받으며 세계 양궁 문제에 대해 세계양궁연맹 관할 기관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의 목표를 촉진한다.
- 1.4.4. 세계양궁연맹은 다음 5개 지역 각각을 대표하는 1개의 대륙 연맹을 인정한다.
 - 아프리카
 - 미주
 - 아시아
 - 유럽
 - 오세아니아

집행 위원회가 예외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원국은 자동으로 NOC의 각 대륙 조직에 근거한 대륙 연맹의 회원이 된다.

1.4.4.1. 대륙 연맹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올림픽 및 세계양궁연맹의 원칙 및 목표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에서 양궁 연맹을 홍보하고 권장한다.
- 경기 운영, 개발 및 교육 부문에서 세계양궁연맹을 지원한다.
- 모든 종목에서 국제 선수권대회 및 국제 대회 조직을 구성한다.
- 대륙 기록을 확정하고 유지한다.
- 대륙 선수권 대회의 결과를 유지한다.

세계양궁연맹은 세계양궁연맹에 이익으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해 대륙 연맹에 추가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계양궁연맹은 우선사항, 목적, 활동 및 예산과 관련하여 짝수 년도에 각 대륙 연맹과 독립적으로 회의하여 공동 협약 체결을 진행한다.

- 1.4.5. 준회원은 양궁 연맹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세계양궁연맹의 활동에 상당 부분의 기여를 희망하는 개인, 기관 또는 기업이 될 수 있다.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연설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다.
- 1.4.6. 준 국제 연맹은 국제 양궁을 홍보하여 대해 세계양궁연맹의 활동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기타 형태의 양궁 연맹이라 할 수 있다. 준 국제 연맹은 총회에 출석하여 연설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다.

1.5. 가입

- 1.5.1. 회원국과 준 국제 연맹 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신청국의 현재 헌장 사본
 - 세계양궁연맹의 회원국과 그 회원에 대한 윤리 강령을 포함한 세계양궁연맹의 헌장을 수락하는 진술문
 - 당해년도의 회비
 - 준 국제 연맹의 경우 협력 계약 제안서
- 1.5.2. 집행위원회가 신청서를 검토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8 / 49

- 1.5.2.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또는 준 국제 연맹 회원 가입 신청이 유효함을 알게 되는 즉시 모든 회원국과 운영위원회에 공표한다. 공표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으면 최종 회원자격이 투표에 따라 결정되는 다음 총회까지 임시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중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집행 위원회는 임시 회원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 1.5.2.2. 집행위원회가 회비 미지불로 인한 퇴출 또는 비활동 기간 후 퇴출된 회원국의 재가입 요청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요청은 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의한다. 재가입 승인은 집행 위원회의 특정 조건에 따른다. 운영 위원회의 결의는 다음 총회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운영 위원회의 결의는 모든 회원국 위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1.15 징계에 의거하여 결의한 퇴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5.3. 총회는 회원국과 준 국제 연맹의 회원자격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불된 수수료는 환불된다.
- 1.5.4. 준 회원국 가입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을 동봉한다.
 - 윤리 및 행동 강령을 포함하여 헌장을 수락하는 진술서
 - 당해년도 회비
 - 1.5.4.1. 집행위원회는 준회원국의 회원가입 신청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즉시 최종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그것을 전체 회원국과 운영 위원회에 공표한다.

1.6. 조직

- 1.6.1. 세계양궁연맹은 정관과 부칙으로 통제된다. 정관의 개정은 총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칙의 개정은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한 후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세칙에 해당하는 정책과 과정을 채택 한다.
- 1.6.2. 총회는 세계양궁연맹의 상위 단체이며, 본 헌장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일체의 권한을 보유한다.
- 1.6.3. 총회는 다음과 같은 세계양궁연맹 임원을 선출한다.
 - 회장
 - 수석 부회장
 - 부회장
 - 운영 위원회
 - 징계 및 윤리 위원회
 - 선수 위원회와 장애인 양궁 위원회의 책임등급분류사를 제외한 상임 위원회

재무 및 감사 이사회는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가 승인한다.

- 1.6.4. 회장,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 1인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 1.6.5. 세계양궁연맹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음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4년의 임기 동안 재직한다.
 - 선출된 자는 동일한 위원회 또는 이사회(운영위원회 제외)에 최대 4텀까지 선출 가능하며, 2텀 연속의 임기를 채운 후 최소 2년 동안 휴직해야 한다.
 - 상임위원회의 회장, 부회장 또는 위원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자는 동일한 직위에 최대 3텀까지 선출 가능하다. 해당 보직을 물러나는 임원은 다른 보직에 출마 할 수 있다.

과도기 절차: 이 규정은 (1.6.5) 2019, 2021년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023 선거부터 해당 된다.

- 1.6.6. 한 임기 동안 세계양궁연맹의 한 개 이상의 임원에 선출될 수 없다.
- 1.6.7.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1.6.5항의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재선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
 - 1.6.7.1. 임원 직위는 다음과 같이 승인되거나 선출된다.

하계 올림픽 이듬해 총회 선출:

- 회장 선출(1인)
- 부회장 선출(2인)
- 상임이사회 선출(3인)
- 재정 위원회 및 감사 위원회 승인(최소 2인의 독립적인 위원을 포함하는 3인)
-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승인(최소 1인의 독립적인 위원을 포함하는 2인)

하계 올림픽 3년 후 총회에서 선출.

- 수석 부회장 선출(1인)
- 부회장 선출(1인)
- 상임이사회 선출(4인)
-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승인(최소 1인의 독립적인 위원을 포함하는 3인)
- 선거 위원회 승인(독립적인 회장을 포함하는 3인)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9 / 49

- 1.6.7.2.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출된다.
 - 하계 올림픽 이듬해 총회에서 선출:
 - 이 헌장 및 규정 위원회 (2인)
 - 필드 및 3D 양궁 위원회 (2인)
 - 이 심판 위원회 (2인)
 - 코치 위원회 (2인)
 - 이 기술 위원회 (2인)이 표적양궁 위원회 (3인)
 - 이의료 및 스포츠 과학 위원회 (3인)
 - 장애인 양궁 위원회 (3인)
 - 하계 올림픽 3년 후 총회에서 선출:
 - 이 헌장 및 규정 위원회 (3인)
 - 필드 및 3D 양궁 위원회 (3인)
 - 이 심판 위원회 (3인)
 - 코치 위원회 (3인)
 - 이 기술 위원회 (2인)
 - 표적양궁 위원회 (2인)
 - 이의료 및 스포츠 과학 위원회 (2인)
 - 이 장애인 양궁 위원회 (2인)
 - 하계 올림픽 1년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선수위원회 2명의 리커브를 대표하는 멤버가 참가 선수들에 의해 선출 된다; 하계 올림픽 개최 년의 세계양궁필드선수권대회에서 1명의 멤버가 참가 선수들에 의해 선출 된다; 하계 올림픽 1년 후에 2명의 컴파운드를 대표하는 멤버가 참가 선수들에 의해 선출 된다. 회원국 혹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입후보 한다. (선출 과정 <u>1편-헌장 및 과정</u>) 전환의 목적으로 2명의 컴파운드 선수는 2019년에 2년 임기로 선출 된다.

1.6.8 다음의 조건에 따라 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인 자
- 채무불이행자
- 사면을 받거나 복역하지 않은 자로 2년 이상의 금고에 처할 수 있는 범죄(금고 판결 여부에 상관 없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 회사 임원 금지 처분을 받은 자
- 본인의 의무를 관리할 개인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적법한 법의 적용에 따른 시민권이 박탈된 자
- 세계양궁연맹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 자격이 상실된 자
- 세계양궁연맹 규정에 따라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으로부터 해고된 자
- 법에 따른 기타 모든 상황에서 해당 지위나 유사 지위를 영위하는 것이 금지된 자
- 직무 기술서에 따른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자격 확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자

1.7. 총회

(부록 1 -총회 절차 참조.)

- 1.7.1. 총회는 회원국 대표들과 운영 위원회 및 상임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의 대표는 해당 회원국이 회비를 완불한 경우에 한해 총회에 출석할 자격이 있다(부록 1 총회 절차, 3.1.6항의 회비 완납에 대한 정의 참조).
- 1.7.2. 각 회원국당 한 명이 투표권을 가지며, 기타 대표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륙 연맹과 국제 연맹의 대표의 수는 두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연맹 구성원의 대표는 한 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회원국은 투표권자와 대체 대표권자의 이름을 표기하여 해당 회원국이 서명한 서신을 최소 21일 전까지 총회 개최 전에 제출한다.

- 1.7.3. 회비를 완납한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총회에 참석하는 구성원은 다음의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까지 투표권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 지난 올림피아드에서 2회의 총회에 참석했으며, 그 중 1회는 위임 참석 무관. 임시 총회의 참여는 추가 투표권획득을 위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난 올림피아드에서 최소 12회 이상의 국내 또는 국제 수준의 경기를 조직한 자.
 - 지난 올림피아드에서 최소 2회 이상 남/여 경기에 참여한 자.

고려 대상의 대회(토너먼트)는 실외 월드컵, 세계양궁 선수권대회,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위한 대륙 예선전이다. 회원국이 대표권을 위임한 경우, 추가 투표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4년의 올림피아드 기간은 올림픽 경기가 치러진 이듬해의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0 / 49

1.7.4. 회원국의 투표권은 다른 회원국의 대리인에 위임할 수 있다. 모든 회원국은 한 명 이상의 위임인을 지명할 수 없으며, 각 위임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위임에 대해 위임을 제공 한 회원국과 수락한 회원국이 서명 한 서신을 총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 한다.

모든 회원국은 회비를 완납하기 이전에 권리 위임이 불가하다.

- 1.7.4.1. 집행위원회 위원은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위임권 등에 의해 협회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다.
- 1.7.5. 총회의 회기는 시작 시에 출석 자격이 있는 회원국이 최소 25% 이상 출석한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 1.7.6. 회기 중 찬반 투표수가 동일하여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총회 회장 또는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던진다. 기타 운영 위원회 위원들과 사무총장은 대표로서 투표권을 가지거나 위임 받을 수 없다.
- 1.7.7. 총회는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문제 일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한다. 경기 규정과 관련된 법과 개정안에 대한 발의 및 발안은 하계 올림픽 개최 이듬회의 총회에 한해 고려될 수 있다.
- 1.7.8. 총회의 의결은 최종적이며 차기 총회의 표결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다. 헌장 및 경기 규정의 개정은 2/3 과반수의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얻어야 한다. 반면 그 외의 장에 대한 변경은 단순 다수결의 "찬성" 또는 "반대" 투표수로 결의된다. 선거는 부록1 총회 절차, 6.7. 투표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실시된다.
- 1.7.9. 회장은 자신이 출석한 총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회장이 불참한 경우에는 수석 부회장이 주재하며, 회장과 수석 부회장이 모두 불참한 경우에는 사무총장 이외의 운영 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위 언급된 자들이 모두 불참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대표가 의장으로 선출된다.
- 1.7.10. 집행 위원회는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혹은 월드컵 파이널 직전 또는 직후 동일한 지리적 위치에서 정기 총회를 소집한다. 그러나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와 월드컵 파이널이 개최되지 않을 경우 총회는 2년에 한번 개최된다.
- 1.7.11. 추가 총회는 운영 위원회의 또는 회비를 완납 한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 1.7.12. 특별 총회 소집 통지문은 회의의 목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 통지문에 명시된 사안만이 특별 총회에서 고려될 수 있다.
- 1.7.13. 법의 개정에 대한 발의 및 발안은 회원국, 대륙 연맹, 회장, 운영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에 의해 각 단체의 권한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출될 수 있다. (해당 절차는 <u>부록 1 총회 절차, 6.4. 법률에 대한 동의안</u> 참조.) 1.7.12.1. 총회로부터 최소 15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1.7.14. 부칙 개정에 대한 발의 및 발안은 회원국, 대륙 연맹, 회장, 운영 위원회 또는 상임 위원회에 의해 각 단체의 권한에 따라 사무 총장에게 제출될 수 있다.(해당 절차는 부록 1 총회 절차, 6.6. 동의안 절차와 부칙 제안 참조.)
- 1.7.15. 사무총장은 법의 개정에 대한 모든 발의 및 발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포하여 검토, 조사 및 권고하도록 한다.
 - 1.7.15.1. 이는 평일 5일 이내에 배포되어야 한다.
 - 1.7.15.2. 제출된 발의 및 발안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총회가 시작되기 120일 전에 각 단체의 권한에 따라 상임 위원회가 제출한 발의 및 발안과 함께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1.7.15.3. 사무총장은 총회가 시작되기 105일 전에 이러한 발의 및 발안을 모든 회원국, 대륙 연맹, 운영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 1.7.16. 회원국, 대륙 연맹, 회장, 운영 위원회, 상임 위원회는 각 단체의 권한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의 개정에 대한 발의 및 발안에 대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게 발송한다.
 - 1.7.16.1. 제출 기한은 총회가 개최되기 90일 전이다.
 - 1.7.16.2. 총회가 개최되기 60일 전에 사무총장은 다음을 수집하여 모든 회원국, 운영 위원회, 명예 임원,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상임 위원회에 배포한다.
 - 총회 안건
 - 재무 및 감사 위원회의 보고서, 회계 감사한 수입지출계정 및 대차대조표, 재무 프로그램 및 회계 보고서
 - 세계양궁연맹의 목표를 포함한 연간 보고서
 -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발의안, 발안 및 개정안
 - 상임 위원회의 보고서
 - 해당일까지 수령한 임원 입후보 명단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1 / 49

- 1.7.17. 총회 의장은 절충한 발의안을 제출할 권한을 갖는다.
- 1.7.18.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선출될 직위를 모든 회원국에 발표한다.
 - 1.7.18.1. 추천서 양식은 총회가 개최되기 180일 전에 배포한다.
- 1.7.19. 임원 입후보 양식은 회원국 혹은 운영위원회 멤버가 제출할 수 있다. 한 사람이 2개 직위 이상의 후보가 될 수 없다.
 - 1.7.19.1. 추천인은 후보자가 회원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선출될 경우 해당 직위를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후보자의 서면 진술서를 동봉하며, 선출 된 경우 자격 요건 양식을 기입한다.
 - 1.7.19.2. 이러한 추천서는 총회가 시작되기 최소 90일 전에 사무총장에게 발송되고 소인이 찍혀야 하며, 1.7.16항에 따라 배포한다. 추천서에 소인이 찍힌 날짜가 총회로부터 90일 미만일 경우, 해당 추천서는 총회 시작 전 최소 21일 전에 사무총장이 수령해야 한다.
 - 1.7.19.3. 선출될 직위의 수 보다 적은 수의 후보가 있을 경우 2차 입후보 추천이 시작 된다. 사무총장은 후보 명단과 이를 발표하며, 30일의 시간을 두고 후보 지명 접수를 받는다. 최종 후보 명단은 총회 개최 40일 전까지 발행한다.
- 1.7.20. 총회 회기는 기록하여 의사록을 배포한다.
 - 1.7.20.1. 사무총장은 총회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모든 회원국, 명예 임원, 운영 위원회, 상임 위원회에 의사록을 배포한다.
 - 1.7.20.2. 총회의 모든 참가자는 본인의 발언을 전부 보고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가자는 본인이 발언한 회기의 종료 전까지 서명한 서면 문서를 제출한다.

1.8. 회장

- 1.8.1. 회장은 세계양궁연맹을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 위원회 및 상임 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 1.8.2. 모든 총회에서 회장은 연맹의 활동과 프로그램 및 차기 총회까지의 기간 동안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1.8.3. 모든 선수권대회의 비상 상황에서 회장은 회장이 세계양궁연맹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규정 변경을 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갖는다.
- 1.8.4. 회장은 부회장을 위임할 수 있으며, 만약 그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타 세계양궁연맹의 임원이 주요 행사나 회의에서 연맹을 대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 1.8.5. 회장은 위원들 중에서 상임 위원회의 의장들과 부의장들을 임명하여 2년간 재직하도록 한다.
- 1.8.6. 회장이 은퇴하거나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을 거절할 경우 수석 부회장이 차기 총회까지 회장의 의무를 수행한다. 만약 수석 부회장이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 위원회는 부회장 중에서 1명을 선출하여 차기 총회까지 회장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1.8.7. 회장은 모든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다.
- 1.8.8. 세계양궁연맹 회장에 대한 보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보수의 조건과 수준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며, 서면 계약서를 통해 규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9. 부회장

- 1.9.1. 수석 부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이 존재한다.
- 1.9.2. 회장이 역할 수행을 위해 출석할 수 없고 다른 위임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수석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한다.
- 1.9.3. 각 부회장은 회장이 정하는 대로 세계양궁연맹의 다양한 면을 감독한다.
- 1.9.4. 수석 부회장이 은퇴하거나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을 거절할 경우 운영 위원회는 부회장 중 1인을 선출하여 차기 총회까지 수석 부회장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수석 부회장이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거나 해당 총회에서 그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신임 수석 부회장을 선출한다. 그 직위에 대한 후보자는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는 부회장(들)과 해당 총회의 부회장 후보자들로, 후보자가 이러한 추천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10. 사무총장

- 1.10.1. 사무총장은 세계양궁연맹 행정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임원이다.
- 1.10.2. 사무총장은 집행 위원회가 임명하고 운영 위원회가 승인하며 세계양궁연맹 기금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2 / 49

- 1.10.3. 사무총장은 집행 위원회와 운영 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다.
 - 1.10.3.1. 사무총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올림픽 패밀리와 기타 국제 스포츠 기구에서 회장이 세계양궁연맹을 대표하도록 지원한다.
 -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을 감독한다.
 -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의제 및 연관된 문서 포함)를 준비한다.
 -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연간 예산과 기타 재무 정보를 준비한다.
 -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보관하고 배포한다.
 - 회원국과 운영 위원회에 적시에 관련 정보를 배포한다.
 - 공식 발간물을 편집하고 승인한다.
 - 임시 가입을 처리한다.
 - 기록과 결과를 보관한다.
 - 성적우수상을 수여한다.
 - 필요 시, 스태프 중에서 투표권이 없는 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선출한다.
- 1.10.4. 사무총장은 연간 상세한 예산을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1.10.5.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 연간 행정보고서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2년마다 총회에 제출한다.
- 1.10.6. 사무총장은 헌장 및 규정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다.
- 1.10.7. 사무총장이 은퇴하거나 활동할 수 없거나 활동을 거절할 경우, 집행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 대행을 선출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1.11. 재무 감사 위원회

1.11.1. 재무 감사 위원회의 위원 3인은 회장의 권한에 따라 재무 검토를 실시한다. 최소한 2명의 멤버는 독립적이어야한다. 멤버는 재무관련 학력을 가지거나 임명 전 5년간 관련 회계 또는 재무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위원회 의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독립적인 자로 한다.

1.11.1.1.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다.

- 총회, 운영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에 필요한 재무 정보의 검토
- 수입지출계정 및 분기별 관리계좌의 검토
- 운영 위원회 제출에 앞서 연간 예산의 검토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재무관련 사안의 고려
- 재무 관련 사안에 대한 집행 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의 주의 환기
- 1.11.2. 재무 감사 위원회는 연간 운영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에 2년마다 제출한다.

1.12. 운영 위원회(The Executive Board)

- 1.12.1. 운영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회장
 - 수석 부회장
 - 부회장 3인
 - 기타 위원 7인
 - 선수 위원회 의장

또한 완전한 참가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 다음의 당연직위원:

- 사무총장
- 헌장 및 규정 위원회 의장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 동일한 회원국 소속의 구성원이 최대 2인 이상 존재할 수 없다.

1.12.2. 운영 위원회는 총회 간 세계양궁연맹을 총괄하는 단체이다. 운영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번 소집된다.

1.12.2.1. 운영 위원회는 만나서 회의를 개최하거나 기타 동시 녹음 통신 장치를 사용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1.12.2.2. 운영 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12.3. 운영 위원회의 특별 회의는 집행 위원회의 요청 또는 운영 위원회 위원 총 수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1.12.3.1. 사무총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최소 10일 전에 모든 운영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에 대해 통지하고 회의의 안건을 통지문에 명시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3 / 49

- 1.12.4. 운영위원회 혹은 투표 정족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1.12.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표현된 찬반 투표의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 1.12.5.1. 운영 위원회는 우편, 전자식 투표 혹은 팩스 투표로 의결하지 않는다. 명기된 일자가 지난 후 사무총장에게 도달하는 투표는 고려되지 않는다.
 - 1.12.5.2. 표결이 나지 않을 경우,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던진다.
- 1.12.6. 운영위원회 주된 의무는 총회에서 정한 목적과 목표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이 하는 업무를 총괄 및 감독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과 목표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세계양궁연맹의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금 할당 예산의 승인
 - 연간 재무 보고서의 승인
 - 사무총장의 직위 및 추가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의 직위에 대한 임명 승인
 - 심판위원회가 추천한 올림픽 게임 심판 임명
 - 변경된 규정의 이행 검토
 -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제안한 징계 결의
 - 심판 지위 갱신 거부에 대한 항소 결의
 - 6권 34.13 항에 따른 도핑 문제 결의 및 회원국의 반도핑 규정 및 세계 반도핑 규정의 준수 보장
 - 부칙 변경 승인
 - 회장의 보수 조건 및 수준
- 1.12.7. (회장 또는 수석 부회장 외에)운영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사무총장이 서면으로 경고장을 발행한 후 2회 연속으로 운영 위원회 회의에 미출석 혹은 6개월 연속으로 운영 위원회 문제에 운영 위원회 위원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운영 위원회는 해당 위원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총회 기록을 참조하여 그 위원 다음으로 많은 찬성표를 받았지만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자로 공석을 채운다. 단, 첫 번째 무기명 투표에서 최소 35%의 득표 기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더 이상 회원국의 회원이 아니거나 또는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의향이 없는 경우, 운영 위원회는 대체 위원을 임명한다. 대체 위원은 차기 총회까지만 요효하다
- 1.12.8. 운영 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예산 포함)을 발행하여 회원국과 임원 전체에게 배포한다.

1.13. 집행 위원회(The Executive Committee)

- 1.13.1. 집행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의 다음 임원으로 구성된다.
 - 회장
 - 수석 부회장
 - 부회장 1인. 부회장은 연간 운영 위원회가 임명한다.
 - 이들 중 2명은 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 사무총장은 집행 위원회를 지원한다.
- 1.13.2. 각 결의는 단순 다수결로 한다.
- 1.13.3. 집행 위원회는 모든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 1.13.4. 집행 위원회는 적절한 회계 장부가 유지되게 해야 한다.
- 1.13.5. 집행 위원회는 반도핑 관리자를 임명한다.
- 1.13.6. 집행 위원회는 반도핑 위원회를 추천한다(빠른 시일 내 적합한 참고자료 기재 예정.).
- 1.13.7. 집행 위원회는 치료목적 사용면책(TUE) 위원회를 임명한다(빠른 시일 내 적합한 참고자료 기재 예정.).
- 1.13.8. 집행 위원회는 반도핑 규정의 위반 시 선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빠른 시일 내 참고자료 기재 예정.).
- 1.13.9. 집행 위원회의 부회장이 은퇴하거나 임기 중에 근무가 불가능하거나 근무를 거부할 경우, 운영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집행 위원회 위원인 부회장을 선출하여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하도록 해야 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4 / 49

1.14. 징계 및 윤리 위원회

(부록1 -총회 절차, 부록 3- 징계 및 윤리 위원회를 위한 절차 참조.)

- 1.14.1. 총회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위원 5인을 선출하여 세계양궁연맹 패밀리 구성원의 윤리 및 행동 강령법을 포함한 세계양궁연맹 헌장과 규정 위반 혐의를 조사하도록 한다. 단, 반도핑 규정 위반은 반도핑 위원회에 책임이 있으며,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 1.14.2.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른 회원국에 소속된다. 구성원 중 최소 2인은 독립적인 자로 한다.
- 1.14.3.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독립적인 자로 한다.
- 1.14.4. 징계 및 윤리 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에 사건을 제출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운영 위원회
 - 집행 위원회
 - 회원국
 - 대륙 연맹
 - 소청 위원회 소청 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최된 대회에서 발생한 사건
- 1.14.5.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관련된 제반 당사자들을 위한 절차상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1.15. 징계

(반도핑 규정 위반 제외)

- 1.15.1. 징계 및 윤리위원회는 조사된 각 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을 제안한다.
 - 무관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을 기각
 - 무죄 선고
 - 징계 부과
- 1.15.2. 다음과 같은 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 공식적 문책
 - 기록 인정 철회
 - 상 수여 철회
 - 임시적 또는 부분적 정지
 - 제명
 - 위 징계 중 2개 이상
- 1.15.3. 퇴출된 회원은 최종 결정 내용에 따라 회원 자격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기 총회 또는 2년 후 중 이른 시점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이거나 납득이 가능 한 상황에서는 보다 이른 시점에 퇴출 회원에 대한 자격 재부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 1.15.4. <u>1.15.3항</u>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는 운영 위원회가 처리하며, 운영 위원회는 권고사항을 동봉하여 본 신청서를 모든 회원국에 배포하고, 결의를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 1.15.5. 사건 조사 비용은 유죄로 판명된 자가 부담한다.
- 1.15.6.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결의는 운영 위원회가 진행한다. 선출된 임원이 사무국 직위의 오용으로 인해 기소되는 사건이나 세계양궁연맹의 회원의 퇴출이 권고되는 경우, 모든 회원국에 권고문을 배포하고 결의를 위해 총회에 제출한다. 총회의 결의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운영 위원회는 총회가 현재 문제를 고려하기 전에 해당 회원에 대한 잠정적 정지를 부과한다.
- 1.15.7. 경우에 따라 운영 위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가 최종적이나, 1.30항의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따른다.
- 1.15.8. 모든 징계는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 모든 회원국, 모든 세계양궁연맹 심판에게 전달한다.

1.16. 상임 위원회

- 1.16.1. 다음의 상임위원회가 존재한다.
 - 헌장 및 규정 위원회
 - 기술 위원회
 - 표적양궁 위원회
 - 필드 및 3D 양궁 위원회
 - 심판 위원회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5 / 49

- 의료 및 스포츠 과학 위원회
- 선수 위원회
- 코치 위원회
- 장애인 양궁 위원회
- 1.16.2. 상임 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총회의 회기 간에 상임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16.2.1. 선출 후, 위원회는 차기 총회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양궁연맹의 목표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제안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 1.16.2.2. 위원회는 매 총회에서 채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 1.16.2.3. 각 위원회의 의장은 연간 세계양궁연맹의 목표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 계획서와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구하는 예산안을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 1.16.2.4 어떠한 이유로든 의장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를 대신한다.
- 1.16.3. 동일 회원국의 위원이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1.16.4. 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집행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와 상의하여 신임 위원을 선출한다. 상임 위원회의 위원이 6개월 동안 연속으로 위원회의 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서면 경고장을 발송한 후에 구성원이 활동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신임 위원을 임명하여 위원회가 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임명은 관련 위원회에 남아 있는 활동 위원들과 상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 위원의 임기 기간은 차기 총회까지이다.
- 1.16.5. 의장은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의장의 위원회가 담당한 과업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 1.16.6.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규정의 해석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 1.16.7. 회원국, 운영 위원회 또는 기타 상임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해 질문을 제출하며, 사무총장은 해당 위원회에 질문을 전달한다.

회원국은 각 해석 요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비용의 납부 시기 및 금액은 집행 위원회가 정한다.

- 1.16.7.1. 질문의 내용이 1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해당 위원회들은 헌장 및 규정 위원회 의장의 조정을 통해 합동 조사를 수행한다.
- 1.16.8. 위원회의 모든 응답은 헌장 및 규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기존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여 즉시 모든 회원국, 운영 위원회, 상임 위원회 및 모든 세계양궁연맹 심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다.
- 1.16.9. 이러한 해석은 차기 총회에서 확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세계양궁연맹이 수락하며, 이후 적절히 헌장 및 규정에 포함시킨다.

1.17.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

- 1.17.1. 5인으로 구성된 헌장 및 규정 위원회는 적격성, 선수권대회, 대회, 기록 및 상에 대한 헌장 및 규정 관련 사안을 처리한다
 - 위원회는 모든 규정 변경 및 기타 승인된 해석을 포함하여 갱신된 헌장 및 규정을 작성한다.
 - 위원회는 규정에 사용되는 단어 선택을 명확하게 하고 오류와 누락을 교정하며 제출자의 의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의안의 단어 표현을 조정한다.
 - 위원회는 총회가 승인한 발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부칙을 개정, 삭제, 또는 제정한다.
- 1.17.2. 5인으로 구성된 기술 위원회는 양궁 장비와 관련한 문제를 처리한다. 기술 위원회는 기타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일한다.
- 1.17.3. 3인으로 구성된 표적양궁 위원회는 표적양궁과 관련한 다음의 문제를 처리한다.
 - 조직 및 안전
 - 발사 규정
 - 경기장 레이아웃
 - 표적양궁 개발
 - 표적양궁 정보
 - 선수 유니폼
- 1.17.4.5인으로 구성된 필드 및 3D 양궁 위원회는 필드 양궁 및 3D 양궁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처리한다.
 - 조직 및 안전
 - 발사 규정
 - 코스 안전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6 / 49

- 필드 및 3D 양궁 개발
- 필드 및 3D 양궁 정보
- 선수 유니폼
- 1.17.5. 5인으로 구성된 심판 위원회(<u>부록 1 총회 절차, 부록 4 심판 위원회의 조직과 절차</u> 참조)는 심판과 연관된 문제를 처리한다.

심판 위원회는 다음을 담당한다.

- 신임 세계양궁연맹 심판 교육과 코스 및 세미나를 통한 승인된 세계양궁연맹 심판 교육 구성 및 이행
- 후보 신청서 및 심판 재임명 검수
- 세계양궁연맹 심판의 최신 명단 유지
- 세계양궁연맹이 심판을 배정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 및 기타 국제 대회에서 심판 배정 및 발사통제관 임명
- 올림픽 경기의 운영 위원회 심판 및 심판장 추천
- 1.17.6. 5인으로 구성된 의료 및 스포츠 과학 위원회는 양궁 참가와 관련한 모든 의료 문제를 처리한다. 구성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최소 3명이 의사이다.
- 1.17.7. 5인으로 구성된 선수 위원회는 선수로서 관심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기타 관련 위원회의 주의를 환기한다. 선수 위원회 후보는 선거 시기에 이전 4년 동안 최소한 1개의 대회에서 선수로서 소속 회원국을 대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1.17.8. 5인으로 구성되는 코치 위원회는 국제 대회 경기장에서 팀 단장 혹은 코치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다. 코치 위원회 후보는 선거 시기에 이전 4년 동안 최소한 1가지 대회에서 코치 또는 단장으로서 역량을 보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 1.17.9. 7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양궁 위원회는 장애를 가진 선수와 연관된 일체의 문제를 처리하고, 기타 관련 위원회와 협력하여 일한다. 장애인 양궁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를 가진 선수 분류
 - 장애인 선수에 특정한 라운드, 장비, 규정

최고 장애인 양궁 등급분류사는 장애인 양궁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운영 위원회가 임명하며, 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하다

위원회의 멤버 5명은 총회,6번째 멤버는 장애인올림픽 전년도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에서 선출 된다.

1.18. 상임 위원회 절차

- 1.18.1. 사무총장은 규정과 부칙을 변경하기 위해 받은 질문(<u>1.16.8항</u>과 <u>1.16.9항</u>에 따라)과 발의안 및 제안서를 해당 위원회 구성원 전체에게 배포한다.
 - 1.18.1.1. 위원회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답변을 수령한 후, 의장은 추가적 상의가 필요한지 또는 답변 작성이 가능한지 결정한다.
 - 1.18.1.2. 작성된 답변은 위원회의 기타 구성원에게 배포하여 승인을 구하며, 승인된 답변문은 사무총장에게 전송하여 배포한다.
 - 1.18.1.3. 상임 위원회가 작성한 답변은 사무총장이 배포하기 전에 헌장 및 규정 위원회에 제출하여 답변 내용이 규정과 부칙에 일관되는지 확인한다.
 - 1.18.1.4. 사무총장은 규정과 부칙의 변경을 위한 발의안 및 제안서를 <u>1.7.14항</u>과 <u>부록1 총회 절차, 6.6 부칙에</u> 대한 발의안 및 제안서의 절차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 1.18.1.5. 상임 위원회는 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연도에 회의를 소집한다. 총회가 개최되는 연도 및 기타 행사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할 수 있다.
 - 1.18.1.6.상임 위원회는 집행 위원회에 특정 프로젝트 목적으로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9. 선거 위원회

3인으로 구성된 선거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한다. 선거위원회 구성원들은 선거가 이루어지기 2년 전에 운영위원회가 제안하며 총회에서 승인하여 2년의 임기를 채운다.

최소 1인의 구성원은 독립적인 자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다음의 책임을 갖는다.

- 임원 선출과 관련한 행정 절차의 관리 감독
- 관련 규정의 준수 모니터링
- 규정의 올바른 적용 보장
- 지침서 발행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7 / 49

• 후보 승인-지명된 후보가 합의된 규정에 따라 선거 자격을 충족하는지 결정

1.20. 특별 위원회

- 1.20.1. 특별 위원회는 특정 과업, 의무 또는 새로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운영 위원회가 구성할 수 있다.
 - 1.20.1.1. 특별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다.
 - 1.20.1.2. 회장은 위원회 의장을 임명한다.
 - 1.20.1.3. 운영 위원회가 특별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고 매년 특별 목적 위원회를 평가한다.

1.21. 명예 임원

1.20.1. 총회는 세계양궁연맹을 위한 업무 수행에서 공로를 세운 자를 명예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1.22. 평의원회

- 1.22.1. 평의원회는 명예 임원과 헌장 및 규정 의원회 위원들로 구성된다.
 - 1.22.1.1. 회장이 의장을 임명한다.

1.23. 상

(부록 1 - 총회 절차, 부록 5 - 세계양궁연맹 상패에 대한 지침 참조.)

- 1.23.1. 세계양궁연맹은 국제 양궁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동상, 은상, 금상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1.23.2. 상패 수상의 제안은 회원국 또는 운영 위원회 위원들이 한다.
- 1.23.3. 동상은 운영 위원회가 수여하며, 금상과 은상은 총회가 수여한다.
 - 1.23.3.1. 해당 운영 위원회 회의 또는 총회가 시작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모든 제안서를 전달한다. 세계양궁연맹을 홍보하는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문서를 포함하여 상을 수여하도록 제안된 자의 업적에 대한 정보를 제안서와 동봉한다.
 - 1.23.3.2. 이사회는 모든 제안서를 검토하여 운영 위원회 또는 총회에 적절히 추천서를 제출한다.
 - 1.23.3.3. 상패 수령자는 상위, 하위의 상패를 추가 수령할 수 있다.
- 1.23.4. 운영 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세계양궁연맹 밖에 있는 자에게 기타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24. 회비와 벌금

- 1.24.1. 세계양궁연맹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 1.24.2. 총회는 각 회원국이 지불할 연회비의 금액과 지불되는 금액의 통화를 정한다.
- 1.24.3. 회비 지불 기한은 당해 연도의 1월 31일까지이다.
- 1.24.4. 총회는 회원국이 지불할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1.24.5. 각 개인의 신청에 대해 집행 위원회가 회원국의 회비를 정한다.

1.25. 세계양궁연맹 대회 수입

- 1.25.1. 세계양궁연맹은 세계 선수권대회를 통한 모든 상업적 홍보, 매스컴의 보도, 재생산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처리 및수령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갖는다. 세계양궁연맹은 단독재량으로 회원국 또는 기타 조직에 이러한 권리를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있다. 그러한 대회를 개최할 책임이 있는 회원국은 이러한 대회 혹은 회원국의 촬영 장소와 연관된 텔레비전, 영화, 새로운 매스컴(예: 인터넷), 사진 보도 및 광고와 관련한 어떠한 합의도 세계양궁연맹이 세계양궁연맹자체의 계약을 단독 재량으로 실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1.25.2. 세계양궁연맹은 단독 지적재산권(상표권, 의장권, 저작권)을 갖는다.
 - 1.25.2.1. 이러한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세계양궁연맹이 공식 마크나 레전드로 채택한 디자인, 심볼, 로고, 텍스트와 세계양궁연맹의 권한 하에 개최된 특정 경기의 마스코트 또는 엠블럼(emblem)을 포함한다. 이러한 마크, 레전드, 마스코트 또는 엠블럼은 세계양궁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재제작 또는 전시될 수 없다.
 - 세계양궁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 또는 기타 행사에서 상 또는 트로피로 사용되는 컵, 조각, 디자인, 사진, 기타 품목을 포함한다. 이는 세계양궁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재제작 또는 전시될 수 없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8 / 49

- 양궁과 연관되고 세계양궁연맹이 발행한 경기 규정, 행동 강령 또는 교육 자료는 세계양궁연맹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원래 언어 또는 번역되어 재제작될 수 없다. 세계양궁연맹은 그러한 재제작과 관련하여 로열티 지불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 1.25.2.2. 세계양궁연맹은 상기 모든 것에 대한 홍보와 재제작을 합의하고 다른 독립체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한 재제작 혹은 홍보 또는 양도에 기인하는 수입 또는 이익은 세계양궁연맹의 독점 재산이다.

1.26. 회계 감사

- 1.26.1. 세계양궁연맹 규모의 조직에 대해 스위스 조합법에서 예견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수입 및 지출 계정과 대차대조표를 회계 감사한다.
- 1.26.2. 회계 감사(들)는 집행 위원회가 임명하고, 총회가 그 임명을 확정한다.
- 1.26.3. 회계 감사(들)는 적정한 자격을 가지고 본부가 위치 한 국가가 인정한 회계사에 소속된 자로 한다.
- 1.26.4.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준거법에 본 조항의 상기 조건과 상충되는 회계 관련 요건이 포함된 경우, 운영 위원회는 그 법 준수에 필요한 본 정권의 조항을 개정할 권한이 있다.

1.27. 엠블럼, 기, 팡파르

- 1.27.1. 세계양궁연맹의 공식 엠블럼은 총회가 채택한 바 있다. 엠블럼은 세계양궁연맹의 소유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 1.27.2. 세계양궁연맹 기의 색은 흰색이며 기의 중심에 컬러판으로 세계양궁연맹의 엠블럼이 위치한다.
- 1.27.3. 회원국은 세계 기록 또는 성적우수상으로 인정되는 대회(토너먼트)에서만 세계양궁연맹의 기를 날릴 수 있다.
- 1.27.4. 세계양궁연맹은 자체의 공식 팡파르를 갖고 있다(부록1 총회 절차, 부록7 세계양궁연맹 팡파르 참조).

1.28. 사무국과 문서보관

- 1.28.1. 세계양궁연맹의 공식 본부는 스위스이다.
 - 1.28.1.1. 세계양궁연맹의 공식 주소는 Maison du Sport International, Avenue de Rhodanie 54, 1007 Lausanne, Switzerland이다.
 - 1.28.1.2. 집행 위원회가 제안하고 운영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집행 사무국은 어디에나 설립 가능하다.
 - 1.28.1.3. 집행 위원회는 파일 및 문서 보관고를 질서정연하게 보관하고, 후속 집행 위원회에 그 파일들을 완전히 이양할 책임이 있다.

1.29. 공식 언어

1.29.1.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1.29.1.1. 총회를 위하여 공식 언어 외에 실무 언어를 채택할 수 있다.

1.30. 공식 출간물

- 1.30.1. 사무총장은 공식 발간물과 그 배포를 담당한다.
 - 1.30.1.1. 이러한 발간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 최신판 헌장과 규정
 - 1년에 최소 6회 발행되며 세계 양궁 정보로 지칭되는 회람 문서
 - 세계 기록 최신 리스트
 - 최신판 주소록
 - 헌장 및 규정과 일관성이 있는 최신판 조직위원회 매뉴얼

1.31. 스포츠 중재재판소

1.31.1.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한 결의(빠른 시일 내 적절한 참고 자료 기재 예정), 징계 및 윤리위원회의 비준된 권고에 대해 항소하거나 징계 및 윤리위원회에 상당하는 회원국의 최고 내부 재판소의 결의 혹은 비준된 권고에 항소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는 헌장 및 규정의 2권 ~ 5권에 기재된 경기 규정 적용과 관련되지 않은 결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항소는 스위스 로잔 소재의 스포츠 중재재판소에서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재판소는 중재 관련 스포츠 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 항소의 최대 시한은 원래 판결문을 수령한 후 21일까지이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19 / 49

1.32. 책임

1.32.1. 세계양궁연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계양궁연맹이 조직, 후원 또는 인정하는 선수권대회나 대회(토너먼트) 혹은 기타 행사에 참가 또는 출석하는 관객이나 회원국 구성원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 또는 재산적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3. 회원 탈퇴

- 1.33.1. 회원은 사무총장에게 등기 우편을 제출함으로써 세계양궁연맹에서 탈퇴할 수 있다.
- 1.33.2. 탈퇴일자에 상관 없이 당해 연도의 회비는 완납해야 한다.

1.34. 세계양궁연맹 서명

- 1.34.1. 비재정적 문제에 대해 세계양궁연맹은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서명으로 구속된다.
- 1.34.2. 재정적 문제에 대해 세계양궁연맹은 운영 위원회가 수시로 승인한 별도로 명시된 금융 정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2인의 서명으로 구속된다. 회장, 수석 부회장, 사무총장.
- 1.34.3. 세계양궁연맹은 회장, 사무총장 혹은 각 위원에 상당하는 자가 서명한 문서만 인정한다.

1.35. 세계양궁연맹 해산

- 1.35.1. 어떠한 사유로든 세계양궁연맹이 해산될 경우, 그 해산 발생 시 회원국 간에 균등하게 세계양궁연맹의 자산을 분배한다.
- 1.35.2. 세계양궁연맹에 지불해야 하지만 회원국이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분배 전에 할당 금액에서 공제된다.

1.36. 데이터 보호 및 참가 동의

- 1.36.1. 회원국은 운영 위원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데이터 보호 정책을 준수한다.
- 1.36.2. 세계양궁연맹 경기에 대한 참가 조건은 집행 위원회가 수시로 인정하는 양식을 통해 참가 동의를 서명하는 것이다. 각 회원국은 해당 협회의 참가자가 대회 참가에 앞서 이러한 동의서를 서명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0 / 49

선수와 팀 임원에 대한 자격 규정

2.1. 입회

- 2.1.1. 세계양궁연맹이 인정하는 다양한 종목 중 한가지 이상에서 세계양궁연맹 또는 회원국이 인정하거나 관리하는 선수권대회, 경기, 국제 및 전국 대회에 참여 하고자 하는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회원국으로 가입 해야 하며 유효한 국제 면허 (집행 위원회가 국제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례를 채택하기 전에는 선수, 지도자 및 관계자의 회원 협회 회원 자격이 유효한 국제 면허로 간주 된다.)
- 2.1.2. 세계 선수권 대회, 세계 기록 및 성적우수상 대회(토너먼트) 및 기타 세계양궁연맹이 인정하고 지정하는 기타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려면 선수는 자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1.3.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지역 또는 아시아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려면 선수는 올림픽 헌장(<u>부록1 총회 절차,</u> 부록6 - 올림픽 헌장 참조)과 자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1.4. 개인이나 세계양궁연맹에 소속되지 않은 협회가 개최하는 대회 참가는 허용된다. 집행 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의 최대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대회의 참가를 금지할 권한을 보유한다. 그러한 금지 통지문을 해당 대회 전에 회원국으로 발송해야 한다.
- 2.1.5. 부적격자로 공표된 선수나 임원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어떤 자격으로도 세계양궁연맹이나 회원국이 개최 또는 인정한 활동이나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2.2. 자격 규정

(부록1 - 총회 절차, 부록6 - 올림픽 헌장 참조.)

- 2.2.1. 선수와 임원은 페어플레이 및 비폭력 정신을 존중하고 경기장에서 이에 따라 행동한다.
 - 2.2.1.1.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선수 및 기타 모든 구성원은 부록 9의 도박과 반도핑 규정을 준수한다.
- 2.2.2. 선수는 세계양궁연맹, IOC, IPC, WADA의 법이 금하는 물질과 절차의 사용이 금지되며, 선수와 임원은 세계양궁연맹의 반도핑 규정과 모든 세계반도핑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2.2.3. 선수는 광고 목적으로 본인의 신체, 이름, 사진 또는 스포츠 성적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제약이나 한계 없이 (부록 1 총회 절차, 부록 6 올림픽 대진표 참조) 돈이나 상을 수락할 수 있다.
- 2.2.4. 선수는 세계 선수권대회 동안 세계 연맹의 스폰서 계약 요건을 준수한다.
- 2.2.5.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담배와 술 광고 및 스폰서십은 금지된다.
- 2.2.6. 선수는 착용한 의복에 부착된 정규 제조업자의 상표 외에 기타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제조업자의 상표는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등록 상표이다. 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품목을 보유한 경우, 해당 품목에 적절하다면, 해당 품목의 상표는 해당 상표와 일치해야 한다.
- 2.2.7. 선수들은 물품의 일반 상표 외에 선수의 개인 장비와 기술 장비(예: 활, 가방 등)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다.
 - 2.2.7.1. 위 <u>2.2.6항</u>과 <u>2.2.7항</u>에서 지칭하는 모든 광고는 물품 당 400cm²를 초과할 수 없다. 선수 번호는 이 조항에 적용 받지 않는다.
 - 2.2.7.2. 위 <u>2.2.6항</u>과 <u>2.2.7항</u>에서 지칭하는 모든 상표는 보우와 스터빌라이저에서 상표를 제외하고 30cm²를 초과할 수 없다.
 - 2.2.7.3. 선수가 대표하는 국가나 회원국의 공식 휘장, 기 혹은 엠블럼은 크기와 관련하여 제한이 없으며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다.
 - 2.2.7.4. 올림픽 경기를 비롯한 종합경기에서 선수의 이름이나 이니셜은 화살통이나 화살통 벨트에 새기거나 부착할 수 있으나 화살통에 허용되는 문자의 최대 높이는 38mm, 벨트의 경우는 18mm이다. 단로마자만 허용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1 / 49

2.2.8. 경기장에 출석하는 모든 팀 임원 역시 <u>2.2.5항</u>, <u>2.2.6항</u>, <u>2.2.7항</u>, <u>2.2.7.1항</u>, <u>2.2.7.2항</u>에 의거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2.9. 장애인 양궁 대회에 적용 가능한 자격 규정은 3권 21장. 21 – 장애인 양궁을 참조한다.

2.3. 의료 조항

(6권 - 도핑 방지 규정 참조)

- 2.3.1. 세계양궁연맹이 인정하거나 관리하는 선수권 대회, 올림픽, 국제 및 국내 토너먼트(대회)에서 경기하거나 출전 준비를 하는 선수는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도핑 관리 또는 다른 의료 테스트나 검사를 받는데 동의한다.
 - 2.3.1.1. 이례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성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의료 및 스포츠 과학 위원회 또는 IOC가 선수의 성별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조사 및 절차는 기밀로 유지된다. 단, 성별과 관련한 의문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2.3.2. 세계양궁연맹의 의료 조항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페어플레이(정당한 승부), 올림픽 정신, 의료 행위를 통해 예견되는 윤리적 개념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3.2.1. 세계양궁연맹은 올림픽 무브먼트 의료법을 채택하며, 이 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의료 및 스포츠 과학 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의 목적에 따라 법에 정해진 원칙을 따르고 이행한다. 올림픽 무브먼트 의료 규정의 최신판은 http://www.olympic.org/medical-commission에서 열람 가능하다.
 - 2.3.2.2.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개인의 경기 참가와 관련하여 세계양궁연맹의 정책은 해당 IOC 규정을 준수하며,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에 따른다.
- 2.3.3. 세계 선수권대회와 국제 토너먼트(대회)의 모든 참가자는 최소한 자국에서 받는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3.4. 알코올 검사

알코올은 양궁에서 금지된 성분이다. 경기장에 있는 자는 <u>2.3.4항의 알코올 검사</u>에 의거하여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과음한 상태로 참가할 수 없다. 반도핑 샘플 수집에 선별된 선수들 역시 알코올 검사를 받는다. 알코올 검사는 검사를 위해 세계양궁연맹이 임명한 자 또는 세계양궁연맹이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조직 위원회가 임명한 자의 재량에 따라 국제 대회의 경기 중 언제든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3.4.1. 알코올 검사 절차

알코올 검사는 날숨을 검사하여 실시한다. 날숨 검사 결과가 반도핑 위반 한계인 0.1%를 초과할 경우, 다른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10분 후에 2차 날숨 검사를 실시한다. 2차 날숨 검사에서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알코올 검사결과를 양성으로 판정한다.

2.4. 국가대표팀

- 2.4.1. 국제 대회에서 국가대표 팀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할 자격을 얻으려면 선수는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팀 소속 국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경기가 시작되기 최소 1년 전에 국가대표팀 구성원으로서 다른 회원국을 대표하지 않아야 한다.
- 2.4.2. 선수가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국가 대표팀으로 경기하기를 원하는 경우,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기 최소 1년 전에 새로 경기에 참가할 국가에서 거주해야 하고 본인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회원국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회원국이 있는 경우).
- 2.4.3. 국적을 변경하거나 새로 국적을 취득한 선수는 국적을 변경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후까지 선수의 새 회원국의 국가 대표팀을 대표할 수 없다.
- 2.4.4. 동시에 2개국 이상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선수는 그 국가들 중 자기가 선택하는 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위 2.4.2항 ~ 2.4.3항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2.5. 선수가 위에 기재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세계 양궁 대회에서 경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2 / 49

부록 1

총회 절차

절차

- 1.1. 총회의 진행 시간은 안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 1.2. 특별한 환경 하에 이러한 절차는 중지될 수 있다. 절차를 중지하려면 그 중지를 제안하는 발의를 하고 이 중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발의안은 2/3의 다수결로 통과되어야 한다. 헌장 L.1.7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발의안에 포함될 수 없다.

총회 장소

- 2.1. 총회 장소는 조직 위원회의 책임이다. 사무총장의 협력 및 승인을 통해 장소를 준비한다.
 - 2.1.1. 총회 장소는 운영 위원회를 위한 좌석 시설을 갖춘 메인 테이블(가급적 높은 연단에 위치한)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대표들은 열로 정렬된 테이블에 착석한다. 운영 위원회의 테이블에 명판을 놓는다. 회원국의 테이블에는 승인된 3 글자 이니셜로 된 명판을 놓는다. 각국은 알파벳 순으로 배치된다. 상임 위원회는 함께 분류되나, 위원들이 회원국도 대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좌석 위치가 우선된다.
 - 2.1.2. 회의장은 기술적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다수의 마이크(집행 위원회와 상의하여 결정)와 녹음 시설을 포함한다.
 - 2.1.3. 세계양궁연맹의 기를 게양하고, 그 위치는 가급적 운영 위원회 뒤편의 벽이 좋다. 행사(세계 선수권대회)를 위한 특별 엠블럼은 단상 앞에 놓거나 측면 벽에 달 수 있다.
 - 2.1.4. 집행 위원회와 상의하여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을 마련한다. 총회 의사록 및 기타 의사소통을 준비하기 위한 컴퓨터 및 복사기를 포함한 사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1.5. 조직 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의 목표를 상의하기 위하여 소그룹 회의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출석

- 3.1. 총회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개인의 집단으로 구성된다.
 - 3.1.1. 운영 위원회
 - 3.1.2. 회원국, 대륙 연맹, 준 국제 연맹, 준 회원국
 - 3.1.2.1. 대표들은 필요에 따라 통역사를 둘 수 있으며, 이러한 통역사들은 다른 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허용된 최대 대표 수 외에 추가된다.
 - 3.1.3. 회원국은 위임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임은 회원국 중 회비를 완불한 자여야 한다.
 - 3.1.3.1.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은 총회 시작 최소 30일 전에 공식 대리인 양식을 수령해야 한다. 세계양궁연맹은 위임의 적법성을 검사하고, 위임을 신청하는 회원국이 총회에 출석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3.1.4. 상임 위원회 위원들
 - 3.1.5. 명예 임원은 항상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 3.1.5.1. 총회에서 연설할 초청 연사를 초청할 수 있다.
 - 3.1.5.2. 기술 인력은 조직 위원회가 집행 위원회와 연락하여 임명할 수 있다.
 - 3.1.5.3. 언론과 TV 방송사의 사진기자 및 기자는 회의 시작 시 입장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들의 퇴장 시간을 통지한다.
 - 3.1.5.4. 총회에 출석하는 세계양궁연맹 임원과 모든 대표는 출석 기록부에 서명한다.
 - 3.1.6. 회비를 완납한 회원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회비 완납"이라는 말은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까지의 회비 및 운영 위원회가 정한 최종 기한에 기타 청구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한 것을 의미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3 / 49

3.1.7. 참관인의 총회 참석은 허용 된다. 참관인은 그가 대표하는 기관을 확인 하고, 등록 기한을 준수하며 총회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총회 문서

- 4.1.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총회 문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 4.1.1. 안건, 발의안, 보고서, 해석, 현 목표, 의사록은 헌장에 따라 사전에 발행한다.
 - 4.1.2. 위원회 보고서와 추가 보고서는 집행 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비로소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4.1.3. 후보의 이력서를 포함하여 선출을 위해 회원국이 추천한 후보의 목록
 - 4.1.4. 투표용지
 - 4.1.5. 기타 특별히 요청된 문서들

안건

- 5.1. 안건의 목적은 총회 업무가 올바른 순서에 따라 처리되고, 주요 항목이 누락되지 않으며, 총회 개회 전에 대표들에게 안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기 위함이다.
- 5.2. 안건의 수순은 회장과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정한다. 통상적으로 다음 순서로 안건의 항목을 상정한다.
 - 5.2.1. 총회 개회
 - 5.2.2. 출석 보고
 - 5.2.3. 불출석 사과
 - 5.2.4. 회장의 개회사
 - 5.2.5. 세계양궁연맹 목표에 대한 소그룹 토론
 - 사무총장이 이 소그룹을 배정하고 등록에 대해 대표에게 조언한다.
 - 각 그룹은 토론을 주재할 의장과 목표 변경에 대한 권고사항을 기록할 또 다른 1인이 있어야 한다. 회장이 이들을 임명한다.
 - 세계양궁연맹 사무국 직원은 권고사항을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지원을 제공하며, 가능한 한 빨리 운영 위원회 위원 및 대표들에게 그 권고사항을 배포한다.
 - 5.2.6. 투표참관인 임명
 - 5.2.7. 의사록 확정
 - 5.2.8. 의사록 관련 사안
 - 5.2.9. 회장 보고
 - 5.2.10. 징계 및 윤리위원회의 제안된 징계에 대한 결의
 - 5.2.11. 재무 보고 및 재무제표
 - 5.2.12. 발의안 및 개정안(해당 시)
 - 5.2.13. 제안 및 제안 개정(해당 시)
 - 5.2.14. 위원회 보고서 및 해석
 - 5.2.15. 총회 지침을 위한 세계양궁연맹의 목표에 대한 토론 그룹 권장 사항 및 상임이사회에 의한 고려 발표
 - 5.2.16. 임원 선출
 - 5.2.17. 위원회 선출
 - 5.2.18.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총회 문제 중 대표들이 상정을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기타 업무. 이 질문들은 서면으로 하고, 총회 시작 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 5.2.19. 감사 결의
 - 5.2.20. 총회 폐회
- 5.3. 안건의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나열된 수순으로 진행한다. 회장은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 수순을 변경할 수 있다.
- 5.4. 총회는 총회 결의에 대한 발효 일자를 합의하고, 해당 날짜 전에 모든 회원국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충분한 시간을 둔다(<u>부록1</u> <u>- 총회 절차. 6.4.8. 항</u>을 참조.)

총회 중 절차

6.1. 회장

회장은 상급 임원이며, 따라서 모든 총회 참석자는 회장의 품위(Dignity)와 우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회장이 토론에 참여할 경우 대표들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4 / 49

총회 중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헌장 및 규정 위원회 의장이 명확히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가 표결에 부친다. 헌장 및 규정 또는 본 절차에 수록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회장의 결의에 최종적으로 따른다.

6.2. 대표

총회에서 모든 대표는 발언권을 갖는다.

- 6.2.1. 대표는 거수로 발언 의사를 나타낸다.
- 6.2.2. 여러 대표가 동시에 발언을 요청할 경우, 회장의 재량으로 대표에게 발언권을 부여한다.
- 6.2.3. 발언 시 대표는 일반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연단으로 이동한다. 각 발언자는 반드시 회장을 언급한다.
- 6.2.4. 모든 발언자는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의 성명과 대표하는 회원국명 또는 부회장, 회장, 운영 위원회 또는 집행위원회 위원 등의 직함을 말한다.
- 6.2.5. 대표의 발언 중에는 방해 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대표가 "의사 규정 위반 지적"을 하거나 회장이 중단시키는 경우는 제외된다.
- 6.2.6. 발언 시 대표는 토론 중인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6.2.7. 위원회 회부

총회는 특별 사안에 대해 위원회 회부를 결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은 "위원회 사안"으로 불리며, 의례를 비교적 갖추지 않는 것이 허용되고, 각 대표의 발언 수는 1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토론은 의사록에 기록되지 않으며, 기록은 중지된다. "위원회 사안"을 심의하는 동안 토론 중인 문제에 대해 진술이나 제안이 결정되며, 총회가 재개되고 의사록을 작성할 때 이 진술이나 제안을 발표한다.

6.3. 의사록

사전에 배포된 전기 총회 의사록은 "읽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총회 의사록 채택은 회장이 제안한다. 의사록에 대한 토론은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 의사록에 대한 수정이 제안됐을 경우에는 전기 총회에 출석한 대표의 과반수의 투표로 결의한다.

6.4. 법률 발의안

1.7.12항을 참조한다.

- 6.4.1. 발의안은 총회에서 고려하기 위해 제출되는 헌장 및 규정의 수정, 변경 또는 개정이다. 발의안은 헌장에 따라 제시하고 분명해야 하며, 사용될 새 단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 6.4.1.1. 안건 편집 시, 발의안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헌장 및 규정의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된다.
 - 6.4.1.2. 발의안을 제출한 대표는 먼저 발언권을 갖는다. 이후 발의안은 공개하여 토론한다.
 - 6.4.1.3. 각 대표는 동일한 발의안에 대해 발언권이 1회로 한정되나, 회장의 재량으로 재발언이 허용될 수 있다.
 - 6.4.1.4. 토론 중에 회장은 발언자를 향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6.4.1.5. 발의안을 발표하는 대표는 발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최종 발언자로서 응답할 기회를 가진다.
 - 6.4.1.6. 회장은 상황에 따라 각 발언자에게 시간 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
 - 6.4.1.7. 발언을 희망하는 모든 대표는 가능하면 언제든지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 6.4.1.8. 발언자는 항상 반복을 피해야 하고 토론 중인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회장은 대표에게 발언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반복될 경우 대표가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발언을 계속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6.4.2. <u>부록1 총회 절차, 6.6.1.3항</u>에 기재된 대로 사무총장이 발의안을 배포하기 전에 발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발의안이 상정된 경우 발의자의 동의가 있고 총회가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철회 가능하다.
- 6.4.3. 총회가 가결하는 발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이후 폐지될 수 없다.
- 6.4.4. 발의안 수정은 <u>1.7.12항</u>과 <u>1.7.15항</u>에 따르며, 최초의 발의안과 동일한 일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수정은 원 발의안과 직결되며 법에 규정된 수정만이 합법이다. 한가지 이상의 수정이 제안될 수 있지만, 총회는 한 번에 한 가지 수정만 고려한다. 총회 시 논의될 수정안의 순서는 사무총장이 정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5 / 49

- 6.4.4.1. 원 발의안의 순서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수정안을 상정한다.
- 6.4.4.2. 변경된 상정 순서로 인해 의도가 변경되는 것으로 발의자가 판단할 경우, 발의자는 순서 변경을 요청할수 있고, 총회는 그 순서 변경 여부를 정한다.
- 6.4.5. 대표는 찬반 투표를 위해 지명호출을 한다. 이 지명호출이 진행되면, 원래 발의안 제시자에게 응답할 기회와 권리가 주어진다. 그후 즉시 투표를 실시한다.
- 6.4.6. 대표는 발의안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총회에서 더 이상 토론하지 않는다.
 - 6.4.6.1. 제출자가 다음 총회에서 연기된 발의안을 재제출할 수 있다. 동일한 주제의 발의안이나 수정안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발의안이 검토된다.
- 6.4.7. 발의안이나 수정본의 의도와 의미에 변함이 없으면 회장의 재량과 총회 승인으로 별도 구분할 수 있다. 그후 각분리된 부분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
- 6.4.8. 총회가 채택한 발의안이나 수정본은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 개최 다음 해 4월 1일에 발효된다.

6.5. 법률 제안서

- 6.5.1. 제안서에 헌장 및 규정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안서는 의견, 제안, 금전적 제의, 과업, 계획, 요청에 대한 것이며, 총회에 제출해 검토한다.
 - 6.5.1.1. 발의안과 같은 방식으로 제안서 수정을 제안하고 처리할 수 있다.
- 6.5.2. 제안서는 채택을 위해 단순 다수결을 요구한다.

6.6. 부칙 발의 및 제안 절차

- 6.6.1. 회원국, 대륙 연맹, 회장, 운영 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는 각 권한 범위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신규 부칙 또는 삭제를 포함한 부칙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 6.6.1.1. 사무총장은 해당 상임 위원회와 헌장 및 규정 위원회에 모든 제출물을 회부하여 검토 및 권고를 요청한다.
 - 6.6.1.2. 상임 위원회는 제출물을 수령한지 21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답변을 제출한다.
 - 6.6.1.3.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권고문과 함께 제출물을 헌장 및 규정 위원회에 배포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 제출된 수정본이 부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상임 위원회가 제출 또는 수정한 부칙이 기존 헌장 및 규정과 일관성이 있다.
 - 6.6.1.4. 헌장 및 규정 위원회는 위 B.6.6.1.3의 조건을 답변자가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문서와 함께 상임 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지 21일 이내에 사무총장에게 답변한다.

6.6.2. 운영 위원회 결의

- 6.6.2.1. 집행 위원회는 제안된 부칙을 우편 표결에 부치거나 다음 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부칙을 결의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편 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운영 위원회는 답변 수령 후 14일이내에 헌장이 요구하는 다수결로 결의한다.
- 6.6.2.2. 사무총장은 운영 위원회의 결의 후 30일 이내에 운영 위원회가 정한 시행일 부로 승인된 새 부칙을 게시한다.
- 6.6.2.3. 운영 위원회가 제안된 부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운영 위원회는 원래 제안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6.6.3. 총회는 차기 회의에서 부칙 변경을 확정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 6.6.3.1. 회원국 위원회, 대륙 연맹, 회장 또는 운영 위원회가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별도로 투표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는 일괄적으로 모든 부칙을 찬반 표결에 부친다. 총회 문서가 발행되기 최소 30일 전에 이 요청서를 제출한다.
 - 6.6.3.2. 총회가 부칙에 대한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부결하는 경우, 원 부칙을 복원한다.

6.7. 투표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6 / 49

- 6.7.1. 투표할 대표에게 요건은 없다. 투표 대표는 회원국의 대표이며 총회 토론을 들은 후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결의한다. 따라서 회원국이 하는 지시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내 역할을 해야 한다.
 - 6.7.1.1. 주제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회장은 표결에 부치기 전 총회 앞에서 사안의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한다.
 - 6.7.1.2. 다음을 제외하고 카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찬반 표결로 결의할 수 있다.
 - 비밀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어 선출된 지위
 - 3인의 투표 대표가 비밀 무기명 투표를 요청한 경우

모든 투표는 전자식으로 할 수 있다.

- 6.7.2. 사무 총장이 출석을 부른 후 모든 총회 시작 시 투표할 대표(각 회원국 당 1명)의 수를 세고 발표한다. 출석부에 있는 대표의 이름을 각각 호명한다.
- 6.7.3. 다수결(1.7.7. 항 참조):
 - 발의안을 결의하려면 득표 수가 각각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기권은 득표 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 선거는 해당 총회 회기(해당일 투표 시작)에서 등록된 회원국의 유효한 표의 단순 다수결을 요구한다.
- 6.7.4. 임원 선거 절차.

6.7.4.1. 득표수:

- 각 투표 대표는 선출될 보직 수만큼의 투표권을 갖는다.
- 투표할 대표는 선출될 보직 당 1회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권을 위임 받은 경우 2회 투표할 수 있다.
- 정확하게 기표 되지 않은 표는 득표 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6.7.4.2. 1차 투표:

- 단순 다수결로 득표하거나 해당 총회 회기에 등록된 회원국의 유효 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선출된다.
- 선출될 보직 수보다 후보가 많고 모든 후보가 상기의 과반의 표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6.7.4.3. 다음과 같이 2차 투표가 진행되어야 한다:
 - 이미 선출된 후보자와 5표 미만 또는 가장 적게 득표한 후보는 목록에서 제외된다(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들이 동점표일 경우, 채워져야 할 보직의 수에 비해 남아 있는 후보의 수가 불충분하게 되어, 동점표를 결론짓기 위한 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동점표 상태(타이브레이크)에서 득표수가 가장 낮은 후보가 목록에서 제외된다.)
 - 각 투표 대표가 가진 투표권의 수는 채워져야 할 보직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 위 절차는 모든 보직이 선출될 때까지 혹은 모든 보직이 단순 다수결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 경우, 운영 위원회가 다음 총회까지 보직을 채울 특별 (목적) 위원(선거에서 실패한 후보는 제외)을 임명한다.
- 6.7.5. 선출된 임원은 본인이 선출된 총회 종료 시점부터 취임하고, 적법하게 후임자가 선출되어 자신의 임무를 인계 받을 때까지 유임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7 / 49

부록2

윤리 및 행동 강령

윤리 및 행동 강령은 IOC 윤리 규정에 근거하며 세계양궁연맹, 그 임원과 전체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를 지배하는 최고의 가능한 윤리적 가치관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문

세계양궁연맹과 전체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세계양궁연맹의 헌장, 올림픽 헌장, 특히 올림픽 헌장의 기본적인 원칙 준수에 전념할 것을 재언명한다.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불러 일으킨 올림픽 이상에 충실할 것을 맹세한다.

결과적으로 임원이 선출 혹은 임명되는 경우 과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세계 선수권 조직위원회, 올림픽 및 기타 모든 세계 대회 조직위원회 내에서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다음 규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이 존중하게 할 것을 보장한다.

품위

- 1.1. 개인의 품위를 보호하는 것은 올림피즘의 근본적인 요건이다.
- 1.2. 인종, 성별, 민족적 출신, 종교, 철학적 견해 또는 정치 견해, 혼인 여부 또는 기타 이유로 참가자 간에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
- 1.3. 어떠한 약물 도핑 실행도 엄격히 금지된다. 세계 반도핑규정의 반도핑조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1.4. 참가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 성적 괴롭힘을 금지한다.
- 1.5. 인정된 모든 자는 경기장 및 기타 지정된 구역에 있는 동안 중독성 물질(술, 대마초 등)의 영향 하에 있거나 음주 또는 흡연이 금지된다.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장과 회장의 대표 또는 부재 시에는 행사에 참석한 최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그러한 사건은 징계 및 윤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1.6. 국제 대회와 관련한 도박에 참여하거나 도박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지하는 모든 형태의 참가와 그러한 도박에 대한 모든 형태의 홍보를 금지한다.
- 1.7. 전체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환경 보호를 약속한다.

청렴성

- 2.1. 세계양궁연맹 패밀리 또는 그 대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국제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임원 또는 스태프로서 그들의 역할과 연관된 성질의 은폐된 보수, 커미션, 이익 또는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수락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2.2. 관할 지역의 관습에 따라 존경이나 우정의 표시로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이 액면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2.2.1. 미화 \$150를 초과하는 고가의 선물에 대해서는 그 선물을 수령한지 30일 이내에 세계양궁연맹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2.2.2.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에서 선물에 대한 보고문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선물의 최종 도착지를 정하거나 선물(또는 선물의 가격)을 선물의 원래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2.3.

세계양궁연맹의 구성원이나 스태프 혹은 그들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환대는 개최국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세계양궁영맹의 직원 혹은 휘원이, 세계양궁연맹과 조직자간의 협조협약에 따라 예상되지 않는, 여행 일정을 조직자, 회원, 혹은 대륙 연맹(그 구성원 또는 스태프가 세계양궁연맹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수락 전 징계위원회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이 초대가 본 규정에 반하는 경우 그 개인이 초대를 거절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 2.4.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다음과 같이 그들이 속한 조직과 올림픽 조직 내 다른 기구 간 이해의 충돌을 피한다.
 - 2.4.1. 단독으로 혹은 조직 내에서 행동하면서 한 개인의 의견 또는 결정이 전술한 자가 현재 갖고 있거나 과거에 가졌던 관계 혹은 그 자의 의견이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개인 또는 조직과 가진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한 경우 잠재적인 이익 분쟁이 발생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8 / 49

- 2.4.2. 잠재적인 이익 분쟁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지 않은 자가 L.2.4.1.에 기재된 상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이익 분쟁이 발생한다.
- 2.4.3. 잠재적인 이익 분쟁 상황 또는 이익 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에 알리고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이익 분쟁만은 금한다.
- 2.5. 세계양궁연맹의 구성원은 임무 수행에서 의무 및 직무상의 신의성실을 위해 노력한다. 세계양궁연맹의 구성원은 세계양궁연맹과 올림픽 무브먼트의 명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 2.6.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올림픽 헌장이나 현 규정에 기재된 원칙과 불일치하는 활동을 하는 회사나 개인과 연관되지 않는다.
- 2.7.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세계양궁연맹의 조직 내에서 주어진 방식으로 투표하거나 개입하도록 하는 지시를 해서도 안되고 그러한 지시를 수락해서도 안된다.

자원

- 3.1.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자원은 양궁과 올림픽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IOC가 세계양궁연맹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올림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회계 장부에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 3.2.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수입 및 경비는 장부에 기록하고 이 장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유지해야 한다. 헌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 장부를 회계 감사한다.
- 3.3. 세계양궁연맹 패밀리는 방송사, 스폰서, 파트너, 기타 스포츠 대회 서포터의 전세계 올림픽 경기의 발전과 명망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
- 3.4. 이런 지원은 올림픽 헌장과 현 규정에 정해진 원칙 및 스포츠 규정과 일치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 그 지원이 스포츠 기관 운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 조직과 공연은 IOC가 인정하는 독립된 스포츠 조직의 단독 책임이다.

입후보

4.1. 모든 면에서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세계 양궁 국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입찰하는 도시를 위한 절차와 한장을 존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후보지 도시는 절차의 조항과 불일치하는 정치적 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획득할 목적으로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 정부 당국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의 관계

- 5.1.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보편성 원칙과 올림픽 무브먼트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국가의 정부 당국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5.2.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공적 생활에서 자유롭게 역할을 한다.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올림픽 헌장에 정해지거나 현 규정에 기재된 규정 및 원칙과 불일치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거나 그러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 5.3.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자기가 조직을 구성하는 환경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국제 대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세계양궁연맹 패밀리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기밀유지

6.1.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은 자기에게 기밀을 유지할 임무가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정보 공개가 개인적인 이득이나 혜택이 되어서도 안되고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명성을 손상시키도록 유해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서도 안된다.

독립성

임원들은 세계양궁연맹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세계양궁연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개인의 이해에 기반하여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세계양궁연맹의 임원들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되고 투명성 있으며 독립적인 방식을 고수해야 하며 세계양궁연맹에 대한 충성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해야 한다.

규정집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고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충돌을 공개하는 것은 세계양궁연맹 임원 개인의 책임이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29 / 49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예는 직원, 계약자, 이사, 신탁관리자, 주주, 파트너, 또는 세계양궁연맹의 기타 공급자, 스폰서, 방송인 또는 기타 세계양궁연맹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 또는 세계양궁연맹의 지원으로 수혜 (가령 보조금, 승인 또는 지명)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으로서 개인적 및/또는 물질적 관여를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세계양궁연맹의 임원들은 연간 1회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발생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관계보고서를 관련된 개인이나 조직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양궁연맹의 임원과 세계양궁연맹간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공개여부에 상관 없이)이 있을 경우, 당사자인 세계양궁연맹의 임원은 그가 구성되거나 보고하는 조직의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논이나 결정에 참여하는 등 의견을 표명하고 사건에 추가적으로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필요 시 세계양궁연맹 임원이 소속되거나 그가 보고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해당 사건을 징계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의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의장과 관련한 갈등이 있을 경우 (관련된 개인을 제외한) 운영 위원회 또는 집행 위원회가 사안에 대해 투표에 부치고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능성이 있다는데 단순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당사자의 회의 참석을 면제하거나 사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이해관계 충돌 당사자는 징계 및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규정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0 / 49

부록 3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절차

일반 원칙

- 1.1.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동등한 특혜와 권리를 가진 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의장의 과업은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업무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다른 구성원들과 상의하여 의장이 달리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으로 조치를 실시한다.
- 1.2. 모든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위원은 서신(통신문)을 수령한 후 10일 내에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서신(통신문)에 답변해야 한다. 의장은 임기 시작 시 모든 서신(서신(통신문))에 대한 합당한 지연(지체)를 설정하고, 그 후의 서신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징계 및 윤리 위원회 회원국은 기타 모든 구성원에게 그 사건에 대해 서신(통신문) 사본을 발송한다.
- 1.3. 한 구성원이 조치를 시작하거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세계양궁연맹 패밀리의 구성원을 상대로 조치가 시작되는 경우, 그 구성원은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번적 조치 시작

- 2.1. <u>1.14.4항</u>에 의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회원국 또는 대륙 연맹은 사무총장을 통해 고소를 시작할 수 있다. 고소장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법적 조치 시작 당사자의 신원; 회원국 및 대륙 연맹일 경우 회장 및 사무총장의 성명과 서명. 기타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의 성명과 역할 및 서신(통신문) 받을 주소.
 - 문제가 되는 헌장 및 규정의 항을 표시하고 혐의를 명확하게 서술
 - 원본 문서 또는 적절히 입증된 사본 증거
 - 증인이 제공하는 자료 표시 및 증인의 명확한 신원.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발생한지 1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2. 사무총장은 제출된 증거 전부를 포함하여 <u>1.14.4항</u>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제시된 혐의들을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회원국들에 배포한다.
- 2.3. 답변 당사자는 의장이 결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혐의 수령 후 10일 이내에 징계 및 윤리 위원회 의장에 심의 증거를 뒷받침 하는 진술서를 (사무총장에게 사본) 제출할 수 있다. 답변이 없는 것이 답변하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리는 서신(통신문)을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한다.

절차

- 3.1.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회원국들은 의장에게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혐의를 판결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증거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해당 시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 있다.
- 3.2. 충분한 증거 있다고 다수결로 의결되는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된다.
- 3.3. 다수결로 의결되지 않는 경우,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의장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증거를 요청해야 한다. 이 징계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답변하는 당사자에게 배포된다.
- 3.4. 답변하는 당사자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의장에게 추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추가 진술은 위 2.4항에 기재된 대로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된다.
- 3.5. 징계 및 윤리 위원회 구성원은 혐의가 입증 또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진술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결의와 권고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1 / 49

- 4.1. 혐의에 대한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판결은 구성원들의 단순 다수결로 내린다. 동점표는 의장 또는 의장이 결석한 경우 부의장이 던지는 캐스팅보트로 결정한다.
- 4.2. 혐의가 입증되었음을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알게 된 경우, 의장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징계를 논의하도록 제안한다. 구성원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의장은 4.1항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투표 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에게 투표를 하도록 최종 권고장을 제출한다.
- 4.3.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조사 결과와 징계에 대한 가능한 권고사항을 통지한다.
- 4.4. 사무총장은 징계에 대한 가능한 권고사항을 운영 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시 운영 위원회 또는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징계

- 5.1. 운영 위원회 또는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까지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
- 5.2. 일반적 또는 부분적 정직 처분이 가능하며, 세계양궁연맹이 인정한 대회에 대한 특정 권리 또는 활동이나 임명 또는 자격에 한정될 수 있다.
- 5.3. 총회가 결의하는 경우, 운영 위원회는 총회가 결정하기까지 잠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2 / 49

부록4

심판위원회 조직과 절차

심판 조직

심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세계양궁연맹 심판:
 -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세계양궁연맹 IJs);
 -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후보(세계양궁연맹 IJCs);
 -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세계양궁연맹 YJs);
- 대륙 심판(CJs);
- 국내 심판(NJs).

국내 심판(NJs)

- 2.1. 모든 회원국은 국내 심판(NJs)을 교육하고 인증한다.
 - 2.1.1. NJs는 헌장 및 규정에 달리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대회(토너먼트)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2.1.2. 훈련 및 승인 절차는 세계양궁연맹 규정 하에 수행되는 대회(토너먼트)에서 판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대륙 심판(CJ)

- 3.1. 모든 대륙 연맹은 대륙 심판(CJs)을 교육하고 승인한다.
 - 3.1.1. CJ는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대회 외에 세계양궁연맹 규정 하에 모든 대회(토너먼트)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 3.1.2. 훈련 및 승인 절차는 세계양궁연맹의 규정 하에 수행되는 대회(토너먼트)에서 판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3.1.3 회원국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해당 대륙 연맹에 대륙 심판 위원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원국은 최소 2년간 국내 심판으로 인증을 받은 심판만 추천할 수 있다.
 - 3.1.4. 대륙 연맹은 정기적으로 국내 심판의 대륙 심판 자격 시행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한다. 세미나는 세계양궁연맹의 공식 언어 또는 해당 대륙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진행된다.
 - 3.1.5. 대륙연맹은 대륙심판 (IJ/IJc 제외) 인가 종료 시점에 재인가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3.1.6. 대륙 연맹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인증 기간, 재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정한다.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후보(세계양궁연맹-IJCs)

4.1. 심판 위원회가 구성한 교육 과정에 이수하여 관련 시험을 통과한 대륙 심판(부록4, 8.3.1.항)은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후보 (세계양궁연맹 -IJc) 자격을 획득한다. 세계양궁연맹의 인증을 받은 후 세계 선수권대회 혹은 기타 세계양궁연맹 대회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세계양궁연맹-IJs)

- 5.1.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세계양궁연맹-IJs)은 활동 심판으로 부록4,13.1.항에 따라 승급되고 부록4, 13.2.항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5.1.1. 세계양궁연맹-JJs는 세계양궁연맹 규정 하에 대회(토너먼트)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고 올림픽에서 부록1-총회절차, 15.2항에 명시된 제한을 적용 받는다.
 - 5.1.2. 회원국은 (추후 내용 추가) 경우를 제외하고 4인 이상의 세계양궁연맹-Ds를 초과하는 심판을 보유할 수 없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3 / 49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세계양궁연맹-YJs)

- 6.1.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YJs)은 부록4, 9.2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활동 심판이다.
- 6.2.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은 유스 선수권대회, 유스 올림픽 및 기타 세계양궁연맹이 인증한 국제 유스 대회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될 자격이 있다. WA 심판위원회는 국제심판의 감독 하에 기타 세계양궁대회에 임명한다.

세계양궁연맹 심판 인증(세계양궁연맹-IJs, 세계양궁연맹-IJCs 및 세계양궁연맹-YSs)

- 7.1. 심판 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 심판의 인증을 담당한다.
 - 7.1.1. 4년의 인증 기간은 올림픽 전해 1월 1일부터 올림픽 개최 2년 후 12월 31일로 한다.
 - 첫 인증은 심판의 테스트 승인일에 시작하고 인증 기간의 종료 시에 만료된다. 인증은 부록 4, 11항 혹은 부록 4, 12.1항에 따라 기한 만료 전에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 7.1.2. 심판 위원회는 인증 갱신을 담당한다. 첫 인증 받은 후 모든 세계양궁연맹 심판의 활동을 재검토하고 인증 기간 종료 시 인증 갱신을 고려한다.
 - 7.1.3. 심판 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 심판 뉴스레터" 발행, 회의 및 세미나 구성, 기타 적절한 시스템을 통해 세계양궁연맹 심판을 정규적으로 훈련하고 갱신할 책임이 있다.
 - 7.1.4. 심판 위원회가 지정한 심판 위원회 멤버(이하 "심판 관찰자"(Judge observer))는 심판 절차와 세계양궁연맹 심판의 임무수행을 살피기 위해 관찰자로서 세계 선수권대회, 대륙 선수권대회, 올림픽의 경기장에 출석한다. 대회(토너먼트) 심판 위원회 의장과 협력하여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다. 심판 관찰자가 경기장에 들어가는 것은 기술 대표, 대회(토너먼트) 심판 위원회 의장과 조직 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심판 위원회의 구성원은 관찰자로서 모든 세계양궁연맹의 인정된 대회의 경기장에 들어가도록 허용된다.
 - 7.1.5. 은퇴하였거나 비활동으로 인해 인증이 갱신되지 않은 심판은 <u>부록1 총회 절차, 8. 세계양궁연맹의 국제 심판 후보에</u> <u>대한 최초 인증(세계양궁연맹 IJCs)의 절차</u>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의 IJs(혹은 해당되는 경우 세계양궁연맹 IJCs)로서 자격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 7.1.6. 심판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비활동 기간과 사유에 따라 신청인이 교육 세미나에 참가해야 할지 갱신 테스트를 통과할 것인지 결정한다.

세계양궁연맹 국제 심판 후보(세계양궁연맹-IJCs) 최초 인증

- 8.1. 회원국은 경험 있는 국내 심판(NJ)만을 세계양궁연맹-IJC 테스트에 추천한다.
 - 8.1.1. 신청자는 최소 3년간 국내 심판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 8.1.2. 신청자는 대륙 심판(CJ)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
 - 8.1.3. 신청자는 충분한 영어 구사력을 갖춰야 한다.
 - 8.1.4. 신청자는 최소 1개의 세계 랭킹 대회(토너먼트) 또는 대륙 연맹이 승인하는 주요 대회(토너먼트)에서 심판 위원회 의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야 한다.
 - 8.1.5. 신청자는 60세 이하이어야 한다.
 - 8.1.6. 신청자는 세미나 개최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세계양궁연맹의 IJC 시험 신청 제출 전 예비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1차 평가 시험을 통과 해야 한다.
 - 8.1.7. 기존 세계양궁연맹 심판이었던 신청자가 11.2.항의 세 번째 항목에 명시된 것 이외의 이유로 승인이 거절된 경우, 승인이 거절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세계양궁연맹 세미나 참석이 허용되며 해당 시 세계양궁연맹 IJC 혹은 YJ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다.
 - 8.1.8. 기존 세계양궁연맹 심판이었던 신청자가 부록4, 12.1항에 명시된 이유로 1회 이상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청이 거절된다.
- 8.2. 회원국은 신청자를 대신하여 세계양궁연맹-IJC 신청서를 세계양궁연맹에 제출한다. 회원국은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으로부터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 8.2.1. 신청서에는 신청자와 해당 회원국, 대륙 연맹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8.2.2. 신청서에 다음을 표시해야 한다. 신청자가 소속된 회원국의 명칭, 신청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신청서를 제출하는 해당 세미나, 사용하는 언어, 국내심판(NJ) 임명일, 대륙심판(CJ) 임명일.
 - 8.2.3. 신청서는 부록4,8.1.4항에 기재된 대회에서 신청자에 대한 심판 의장의 보고서를 포함한다.
 - 8.2.4.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대륙 연맹은 신청자가 임무를 수행한 대회(토너먼트)에서 대회(토너먼트) 심판 위원회 의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증명한다(부록 1 – 총회 절차, 8.1.4 항 참조).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4 / 49

- 8.3. 심판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 회원국이 추천한 신청자가 WA-IJC 자격 획득을 위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회원국은 이 세미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요청은 해당 대륙연맹과 조정해야 한다.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된다.
 - 8.3.1. 신청자 평가는 세미나에서의 구두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세미나 중 다양한 시험으로 신청자를 심사 한다.
 - 8.3.2. 심판 위원회는 해당 회원국을 통해 신청자의 결과를 통지하고, 대륙 연맹에 사본을 송부한다.
- 8.4. 테스트 위원회는 전체 세미나를 참관하고, 심판 위원회 구성원 2인으로 구성된다. 심판 위원회에서 2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헌장 및 규정 위원회, 표적양궁 위원회 또는 필드 양궁 및 3D 양궁 위원회에서 1인을 대신할 수 있다. 심판 위원회는 그러한 임명을 담당한다.
- 8.5. 세미나 테스트를 통과하는 신청자는 최소 2년 간 자격을 유지해야만 하며, 국제 대회에서 심판 활동에 대해 심판 의장인 세계양궁연맹의 IJ로부터 성공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 8.5.1. 후보는 세계양궁연맹 심판의 재인가 절차에 따라야 한다.
 - 8.5.2. 인증 기간 종료 시 재임명 절차는 세계양궁연맹-JJ의 절차와 동일하며 이 절차는 부록4, 10항에 따라 보고 된다.
 - 8.5.3. 세계양궁연맹-JJs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는 부록4. 13.1항에 설명되어 있다.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 인증

- 9.1. 심판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 부록4, 9.2항의 요건 적합한 유스 심판 후보를 지명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다.
- 9.2.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으로 인증 자격 고려시 후보는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9.2.1. 추천 시점 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이다.
 - 9.2.2. 국내 심판이거나 국제 수준의 대회에서(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선수인 자로 본인이 소속된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야하며 그들의 지명 기간 동안 해당 회원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 해야 한다.
 - 9.2.3. 충분한 영어 구사력을 갖추어야 한다.
 - 9.2.4. 세계양궁연맹 심판 위원회가 조직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적이 있고 관련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 9.3. 심판 위원회는 부록4, 9.1항에 기재된 독립적인 재량권을 가지며,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을 인증한다. 이와 같은 인증에 있어 세계양궁연맹의 목적, 정책 혹은 지역 분배 혹은 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다.
- 9.4.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의 후보자 명단, 인증된 심판의 수는 심판 위원회가 수시로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재량을 따른다.
- 9.5.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은 인증 이외의 개인, 선호에 의해 인증 될 수 없다. 세계양궁연맹 심판 후보로서 인증 받고자 하는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은 부록 4에 명시된 인증 요건을 모두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세계양궁연맹 심판 재인가

- 10.1. 재인가는 다음 요건 이행에 따라 결정된다.
 - 10.1.1. 세계양궁연맹 심판 뉴스레터의 의무적인 사례 연구에 정기적으로 답변한다.
 - 10.1.2. 심판 위원회가 2년에 1번씩 임명하는 심판의 의무를 최소한 1개 이상 이행 가능토록 시간할애 해야 한다.
 - 10.1.3. 인증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에 최종 기한 내에 "심판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고 반환한다. 신청자의 회원국과 대륙 연맹이 신청을 지원한다.
 - 10.1.4. 심판 위원회가 실시하는 갱신 평가를 통과한다. 평가는 3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 인증 테스트 전년도의 하반기(2/2분기)에 오픈북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평가의 목표는 심판이 세계양궁연맹의 규정에 대한 최신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 심판 위원회의 승인된 절차에 따라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 심판이 활동한 대회(토너먼트)에서의 심판 위원회 의장과 (출석한 경우) 심판 관찰자의 보고 분석. 이 평가는 경기에서 심판의 실제 임무 수행 입증을 목표로 한다.
 - 인증 기간 중에 최초 참가 컨퍼런스에서 시간제한 클로즈드북(closed book) 시험을 실시한다. 이 평가는 심판의 규정 및 심판 절차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는 능력을 평가한다.
 - 10.1.5. 인증 기간 내에 세계 양궁 심판 위원회가 개최하거나 승인한 심판 컨퍼런스에 최소 1회 출석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5 / 49

- 10.2. 비활동 심판이거나 재인가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인가 평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세계양궁연맹-IJ는 재인가가 거절된다.
 - 10.2.1. 세계양궁연맹-IJCs에게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 10.2.2. 세계양궁연맹 심판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심판은 해당 회원국 및 대륙 연맹과 함께 그 내용을 통보 받는다.
- 10.3. 운영 위원회에 재인가 거절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10.3.1. 관련인, 회원국 또는 대륙 연맹은 재인가 가절 통보 후 14일 이내에 사무총장을 통해 직접 요청한다.
 - 10.3.2. 항소는 인가 거부시 적절하지 못했던 절차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그 항소심은 심판 위원회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기술 평가에 회부될 수 없다.
 - 10.3.3. 요청 시 심판 위원회는 운영 위원회에 심판 위원회가 재인가를 거절한 자의 활동 기록과 보고서를 제공한다.
- 10.4. 세계양궁연맹 유스 심판의 경우, 만 30세가 되는 해에 자격이 만료되면 재인가 절차 자격을 갖지 못한다.

경기 규정과 심판 절차 비준수

- 11.1. 심판 위원회는 11.3항에 따라 심판이 필수 표준 기준에 따른 규정 및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심판위원회는 11.3항에 따라 언제든 심판 인가를 정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11.1.1. 심판위원회는 국제 심판이 대륙 또는 국가에서 임명된 경우에도 인가를 고려할 권리를 가진다.
- 11.2. 심판위원회는 다음의 정의에 기초하여 위반에 대해 경고, 인가 정지 또는 철회가 필요할지 결정한다.
 - 퀄리피케이션이나 매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위반의 경우 경고를 고려 한다.
 - 위반 사항이 보다 위중한 성격이며 세계양궁연맹의 명성에 해가 될 경우에는 인증 정지를 고려한다.
 - 위반 사항이 의도적 및/또는 보다 위중한 성격이며 세계양궁연맹의 명성에 해가 될 경우에는 인증 철회를 고려한다. 2차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인증 철회도 함께 적용 된다.
- 11.3. 경고나 인가 정지 또는 철회가 필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을 적용 한다.
 - 심판 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판단 시, 경고를 발행하고 심판에게 경고 사실과 그에 대한 이유를 통지 한다.
 - 인가 정지나 철회를 고려하기 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심판위원회가 판단할 시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임시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심판위원회는 임시 정지 처분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 심판과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 관련 대륙 연맹 및 회원국에 통지한다. 임시 정지가 내려진 경우 심판은 임시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위원회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고 요청이 심판위원회에 접수되면 심판위원회는 심판의 재고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뒤, 심판과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 관련 대륙 연맹 및 회원국에 통지한다.
 - 심판 위원회는 인가 정지 또는 철회 의사를 심판과 세계연맹 사무총장, 관련 대륙 및 회원국에 통지하여 일정 기간의 인가 정지 (임시 정지 처분을 제외한) 또는 철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인가 정지 또는 철회 처분에 대해 반론할 것을 심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판은 심판 인가에 대한 정지 또는 철회 의사를 전달 받고 14일 이내에 인가 정지 또는 철회 어분에 대한 반론을 심판 위원회에 제출 해야 한다. 심판 위원회는 이러한 변론을 고려한 뒤, 심판 위원회의 결정을 심판에게 통지한다. 이는 인가 정지 또는 철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판이 심판 위원회에 응답해야 하는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세계양궁연맹 사무총장 및 관련 대륙 연맹 및 회원국에 사본을 제출 한다.
 - 인가 정지 기간 (임시 또는 기타) 동안 해당 심판은 심판위원회가 결정문에 이유를 들어 심판 복직을 위한 특별 요건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 대륙 또는 국제 수준의 경기에서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인가 정지 (임시 정지 제외) 또는 철회 처분 결정은 12.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 11.4. 정지 기간에 심판이 정지 기간 종료 후 복직되고자 할 경우에는 부록 4, 10.1항에 명시 된 통상적인 심판 갱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심판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요건은 제외 된다. (부록4, 10.1.2항) 인가가 정지 된 심판은 정지 기간 동안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6 / 49

세계양궁연맹 심판 인증 철회

- 12.1. 부록 4. 10.1.1항 및 부록 4. 10.1.2항 비준수.
 - 12.1.1. 심판이 <u>부록1 총회 절차, 부록 10.1.1</u>과 <u>부록1 총회 절차, 10.1.2</u>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심판 위원회는 즉시 그 심판에게 비활동 사유와 세계양궁연맹 심판 지위를 지속시키기를 원한다는 선언문을 요구하는 동시에 회원국과 대륙 연맹에 사본을 발송하고 "비활동에 대한 경고문"을 통지한다. 심판 위원회는 통지문이 발송된 지 90일 이후 사건을 재검토하고, 이때 관련 심판이 수령한 서류를 고려한다. 심판 위원회가 비활동에 대한 이전의 결의를 확정한 경우, 심판에게 심판 인증의 효력이 즉시 철회된다는 것을 통지한다. 이 통지서의 사본을 심판의 회원국 및 대륙 연맹에 발송한다.
 - 12.2. 12.1항에 명시된 사유로 세계양궁연맹의 인가 철회에 상소하거나 부록4, 11.3항 또는 11.4항에 명시된 사유로 인가 정지/ 철회에 항소하고자 한다면 인가 정지 (임시 정지 제외) 또는 철회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록4, 10.3항의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 12.2.1. 항고 기간 동안 심판은 그 어떤 경기의 임명도 고려할 수 없다. 항소 기간 동안 예정된 임명된 대회가 있는 경우임명이 취소 처분 된다.
 - 12.2.2.2. 운영위원회가 인가 정지 또는 철회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심판은 대회 신청이 가능 하다. 이때 차년도 임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 12.3. 연령 제한
 - 12.3.1. 세계양궁연맹 심판 인증은 심판이 65세가 되는 해 말까지이다.

세계양궁연맹 심판 승급

- 13.1. 세계양궁연맹-IJ 승급
 - 13.1.1.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계양궁연맹-IJC에서 세계양궁연맹-IJ로 승급할 수 있다.
 - 공석이 있어야 한다. (부록4, 4.5.1.3항 또는 부록 4, 13.1.3항)
 - 부록 4. 13.2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세계양궁연맹-IJ 기준을 충족한다.
 - 13.1.2. 심판 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통해 승급 인원을 선택 한다.
 - 부록 3, 13.2.항의 요건 충족 정도를 고려한다.
 - 지리적 분포나 성평등에 대한 세계양궁연맹의 목표나 정책의 유무를 고려한다.
 - 13.1.3. 심판의 수 (부록 4, 4.5.1.2항)는 최대 6인으로 늘릴 수 있다.
 - 임명된 세계양궁연맹-IJ가 여성일 경우
 - 운영위원회가 선정한 회원국이 다수의 국제대회를 개최하거나 다수의 출전 선수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 13.2. 세계양궁연맹-IJ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3.2.1. 재인가 절차 중 심판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JJ가 13.2.2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한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심판은 세계양궁연맹-JJ 인증을 받지 못한다.
 - 13.2.2. 세계양궁연맹 인가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양궁연맹-IJ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난 4년간 심판 위원회가 심판을 임명하는 대회 또는 심판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타 대회에 참여하여 해당 대회의 심판 위원회 의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 지난 2년간 세계양궁연맹 심판 뉴스레터의 각호에 포함된 모든 필수 사례 연구에 적절히 답변을 했다.
 - 가장 최근의 재인가 시험을 통과 했다.
 - 회원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별 조건

- 14.1.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거나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올림픽 또는 장애인올림픽 대회 심판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세계양궁연맹-IJ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4.1.1. 최소 5년간 인증 받은 심판;
 - 14.1.2. 지난 4년간 심판위원회가 심판 임명을 하는 대회에 참여하거나 심판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 기준을 가지는 대회에 참여
 - 14.1.3. 지난 2년간 발간된 세계양궁연맹심판 뉴스레터에 포함 된 필수 사례 연구에 뛰어난 응답
 - 14.1.4. 재인가 시험에서의 뛰어난 평가
 - 14.1.5. 지난 2년간 심판 옵저버로부터의 뛰어난 평가
 - 14.2. 세계양궁연맹 임원
 - 세계양궁연맹 분과위원회 위원이면서 세계양궁연맹-IJ/IJC 또는 YJ를 겸임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분과위원회 임기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7 / 49

기간 동안 심판의 자격을 유지 한다.

- 세계양궁연맹 심판 위원회
 - ·사례연구를 수행, 2년 주기의 임무에 시간 할애, 컨퍼런스 참석, 시험에 응답(부록 4, 10항)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 ·직위에서 물러날 때, 현재의 인증기간 동안 컨퍼런스 (부록 4, 10.1.5항)에 참석, 65세 나이 제한을 초과하지 않으며 WAIJ 직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해당국에 소속
- 세계양궁연맹 기타 분과 위원회
 - ·분과 위원회 임기 기간 동안 임무 수행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부록 4,10.1.2항)
 - ·인가/ 재인가의 모든 기타 요건을 계속해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
- 14.2.1. 선거 혹은 위원회 임명 시 심판 위원회 멤버는 세계양궁연맹 심판 간사로 활동 한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세계선수권대회 활동은 요구되지 않는다. 임명 기간 종료 후, 부록1-총회 절차, 5.1.2항에서 부록1-총회 절차, 5.1.3항과 상관 없이 요청에 의해 이 전의 세계양궁연맹 심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 14.2.2. 선출 되었거나 임명 된 세계양궁연맹 심판 자격을 가진 임원은 세계양궁연맹 심판 활동을 원하는 경우 8부터 13항의 조건을 충족 해야 한다. 요청에 의하여 세계양궁연맹 심판 간사로 고려될 수 있으며 임기 동안 의무를 충족하니 않아도 되며 세계양궁연맹 심판으로서 대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기 종료 시 요청에 의해, 부록1-총회 절차, 5.1.2항과 부록 1-총회 절차, 5.1.3항의 제한에 관계 없이 심판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대회 심판위원회 구성

- 15.1. 세계 선수권대회
 - 15.1.1. 모든 구성원은 세계양궁연맹 심판이며 세계양궁연맹-IJCs는 최대 5명을 넘지 않는다. 의장은 부록 4, 14.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계양궁연맹-IJ이다.
- 15.2. 올림픽 대회
 - 15.2.1. 모든 구성원과 의장은 부록4 총회 절차, 14.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계양궁연맹-JJs이다.
- 15.3. 장애인 올림픽 대회
 - 15.3.1. 모든 구성원은 세계양궁연맹 IJ이다. 의장은 부록 4,14.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계양궁연맹-IJ이다.
- 15.4. 대륙 선수권대회 및 대륙 올림픽 퀄리피케이션
 - 15.4.1. 모든 구성원은 세계양궁연맹 심판 또는 CJs이며, CJs의 구성비는 최대 50%를 넘지 않는다. 의장은 세계양궁연맹 심판이다.
- 15.5. 세계 랭킹 대회
 - 15.5.1. 대륙연맹은 세계양궁연맹 심판 위원회에 심판 위원회 의장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15.6. 세계양궁연맹과 협력하여 조직하는 기타 종합대회와 국제 대회의 심판 위원회 구성은 WA와 조직자의 협의로 구성 된다. 15.6.1. 충족해야 할 요건은 관련 조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보고

- 16.1. 심판의 업무 평가와 관련한 비밀 보고
 - 16.1.1. 대회(토너먼트) 심판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세계양궁연맹 심판의 업무 평가에 대해 세계양궁연맹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기밀로 처리되어 심판 위원회 내에 한해 회람되며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이 보관한다. 심판의 업무수행 보고서는 해당 심판이 임명된 대회의 심판 의장과 공유할 수 있다. 심판 위원회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발행한다.
 - 16.1.2. 대륙 심판의 의장은 대륙 대회에서 대륙연맹이 임명한 심판 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세계양궁연맹-IJ/IJC/YJ에 대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세계양궁연맹 심판 평가 보고서 사본을 심판위원회에 제출 한다.

심판 은퇴

17.1. 심판 위원회는 은퇴하는 심판에게 세계양궁연맹 동상 상패를 제안하거나 기타 국제 심판 상을 제안할 수 있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8 / 49

통신(Correspondence)

18.1. 세계양궁연맹 심판이 세계양궁연맹과 심판 위원회에 전달하는 모든 통신은 서신(통신문) 배포를 담당하는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39 / 49

세계양궁연맹 상패 지침

다음 상황에서 세계양궁연맹은 상패를 수여한다.

모든 상패에 대해 다음 기준이 적용된다.

- 회원국의 현 구성원 또는 전 구성원은 상패를 받을 수 있다.
- 윤리 및 행동 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 상패를 수여할 수 없다.
- 어떤 개인이 상패를 받을 자격이 있는 역할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상패를 수여할 수 없다. 상패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위임자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그 신청을 승인한 후, 피위임자 이사회가 적절히 운영 위원회 또는 총회에 신청서를 추천할 수 있다.
 - 상패 수령자에게 가치가 높거나 낮은 다른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신청서는 다른 회원국 또는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 피위임자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한 아래 기준이 적용된다.

1.1. 동상

- 1. 은퇴하는 운영 위원회 위원
- 2. 은퇴 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상임 위원회 위원
- 3. 은퇴 시 다수의 세계양궁연맹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국제 심판
- 4. 성공적인 대륙 선수권대회 또는 세계 랭킹 대회(토너먼트) 조직 위원
- 5. 다수의 임무를 정기적 및 성공적으로 수행한 개발 또는 올림픽 연대 미션 전문가
- 6.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페어플레이를 함으로써 본 세계양궁연맹의 스포츠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코치와 선수

1.2. 은상

- 1. 은퇴하는 부회장
- 2. 성공적인 세계 선수권대회 또는 올림픽 조직 위원
- 3. 올림픽 기술 대표
- 4.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장기간 성공적으로 세계양궁연맹에서 임무를 수행한 임원

1.3. 금상

- 1. 은퇴하는 회장
- 2. 세계양궁연맹에 예외적이고 우수한 임무를 수행한 임원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0 / 49

올림픽 헌장

부록 6은 세계양궁연맹의 총회 간에 변경된 올림픽 헌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본 부록은 세계양궁연맹 헌장에 대한 부칙으로 간주된다. 단, 운영 위원회와 총회는 이러한 점에서 IOC 결의의 구속을 받으며 세계양궁연맹 총회가 아닌 IOC만이 그 변경을 할 수 있다.

올림픽 헌장 규정 40의 자격 규정

(출처: 올림픽 헌장 2011년 판)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하려면 선수, 코치, 트레이너, 혹은 기타 임원은 IOC가 정한 자격 조건을 포함하여 올림픽 헌장, IOC가 승인하는 관련 IF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선수, 코치, 트레이너, 기타 팀 임원은 본인이 소속한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를 통해 올림픽에 입장해야 한다. 상기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페어플레이 및 비폭력 정신을 존중하고 경기장에서 이에 따라 행동하며
- 세계 반도핑규정의 모든 면을 존중 및 준수한다.

규정 40에 대한 부칙

- 1. 각 IF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자체 자격 기준을 정한다. 이러한 기준은 IOC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 2. 자격 기준 적용은 각 담당 분야에서 IF, IF와 연계된 국가 연맹 및 NOC의 의무이다.
- 3. IOC 운영 위원회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림픽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코치, 트레이너, 또는 임원은 올림픽 기간에 광고를 목적으로 본인의 신체, 이름, 사진 또는 스포츠 성적이 사용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
- 4. 올림픽에 경기 참가 선수가 입장 또는 참가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재정적 고려사항도 조건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올림픽 헌장 규정 50의 광고, 시연, 선전

- 1. IOC 운영 위원회는 허용 가능한 모든 형태의 광고와 홍보의 조건과 원칙을 정한다.
- 2. 올림픽 장소의 일부로 간주된 스타디움, 경기 장소, 기타 경기장 및 그 내부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광고 또는 기타 홍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업적 설치와 광고 사인은 스타디움, 경기 장소 혹은 기타 스포츠 그라운드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 3. 올림픽 장소, 경기 장소, 기타 구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시연 혹은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규정 50에 대한 부칙

- 1. 아래 <u>부록1 총회 절차, 8항</u>에 정해진 바와 같이 관련 아이템이나 장비 제조업자의 식별물을 제외하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기타 참가자의 신체, 운동복, 액세서리 또는 더 일반적으로 그들이 입은 의복이나 사용한 장비의 모든 아이템에 어떠한 형태의 홍보 또는 상업적 선전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로도 선전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단, 그러한 식별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 5.1 1. 제조업자의 식별물은 의류나 장비의 항목 당 최대 1회에 한한다.
 - 2. 장비: 경기 중에 노출된 장비의 표면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제조업자의 식별물은 의도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제조업자의 식별물이 60cm²를 초과할 수 없다.
 - 3. 헤드기어(예: 모자, 헬멧, 선글라스, 고글) 및 장갑: 6cm²를 초과하는 제조업자의 식별물은 의도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 4. 의복(예: 티셔츠, 반바지, 운동복 상의 및 운동복 하의): 20cm²를 초과하는 제조업자의 식별물은 의도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 5. 신발: 제조업자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디자인 패턴이 드러나는 것은 용인된다. 제조업자의 명칭 및(또는) 로고 역시 일반적이고 고유한 디자인 패턴의 일부 또는 그 패턴과 별개인 디자인 패턴으로서 표시되는 면적은 최대 6cm²까지 가능하다.
 - 6. 국제 스포츠 연맹이 채택한 특별 규정의 경우, IOC 운영 위원회가 상기 규정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련된 자의 자격 철회 또는 박탈이 초래될 수 있다. 그 문제에 대한 IOC 운영 위원회의 결의는 최종이다. 선수가 옷에 부착하는 번호는 어떠한 종류의 홍보도 할 수 없으며, OCOG의 올림픽 엠블럼이 부착되어야 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1 / 49

- 2. 유효하기 위해서는 올림픽 엠블럼이나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광고의 종류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요소를 포함하는 OCOG 계약은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고 IOC 운영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타이밍 장비, 점수판과 관련한 계약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식별 신호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한 계약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이 규정 위반은 IOC 운영 위원회 권한의 지배를 받는다.
- 3. 올림픽을 위해 제작된 마스코트는 올림픽 엠블럼으로 간주되고, OCOG는 IOC 운영 위원회에 디자인을 제출하여 승인을 구한다. NO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NOC의 국가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그 마스코트를 사용할 수 없다.
- 4. OCOG는 국내와 해외에서 IOC를 위해 엠블럼 자산과 올림픽 마스코트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단, OCOG가 단독으로, 또한 OCOG 가 종료한 후에는 개최국의 NOC가 올림픽을 개최 해당 연 말일까지의 개최 기간 동안 이러한 엠블럼, 마스코트, 기타 마크, 디자인, 배지, 포스터, 올림픽 준비 중 올림픽과 연관되는 물건과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기간 만료 후 그 엠블럼, 마스코트, 기타 마크, 디자인, 배지, 포스터, 물건 및 서류에 포함되거나 그것들과 관련한 권리 일체는 완전히 IOC에 귀속된다.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한도내에서 OCOG와(또는) NOC는 이와 관련하여 IOC만을 위해 수탁자(수탁 능력으로) 역할을 한다.
- 5. 본 부칙의 조항은 필요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여 한 회기 또는 올림픽 총회 조직 위원회가 서명한 계약서에 적용된다.
- 6. 시합하는 선수의 유니폼과 공적 지위를 가진 모든 자의 유니폼에 기 또는 각자의 NOC 올림픽 엠블럼 또는 OCOG의 동의에 따라 OCOG 올림픽 엠블럼이 포함된다. IF 임원은 그 임원이 소속된 연맹의 유니폼 또는 엠블럼을 부착할 수 있다.
- 7. 타이밍 장비와 점수판을 포함하여 올림픽 선수 혹은 기타 참가자가 사용 또는 착용하지 않는 모든 기술 장비, 설치물, 기타 장치의 식별물은 해당 장비, 설치 혹은 장치 높이의 1/10보다 어떠한 이유로도 높아서는 안 되며 높이가 1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8. "식별"은 각 항목 제조업자의 명칭, 지명, 상표, 로고 또는 기타 고유한 표지를 정상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식별은 항목 당 최대 1회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

양궁 장비의 식별 표시 면제조건

퀴버/백:

각 장비 항목 당 제조업자의 식별 표시 1개가 허용되며, 그 크기는 항목 표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크기는 60cm²이다. 애로:

애로 당 제조업자의 식별 표시 2개가 허용되며, 그 크기는 항목 표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최대 크기는 60cm²이다. 보우/핸들/스태빌라이저:

제조업자의 식별 표시는 보우, 그립, 스태빌라이저의 양면에 사용 가능하며, 올림픽 경기 개최연도에 시판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2 / 49

선수위원회 선거 절차

위원 선출

- 1.1.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에서 5인의 선수 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과 올림픽 개최연도에 세계양궁연맹 필드 선수권대회에서 1인의 위원이 선출된다.
- 1.2. 세계양궁연맹 선수권대회에서 선출되는 위원 5인은 다음 중 각각 1인을 선출한다: 남자 리커브 1인, 여자 리커브 1인, 남자 컴파운드 1인, 여자 컴파운드 1인, 장애인 아처 1인.
 - 세계양궁연맹 필드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선출하는 구성원의 경우, 모든 성별 및 카테고리에서 후보가 추천될 수 있다.
- 1.3.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수는 각각 최대 4인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 2인 이상의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이 있어야 한다.
- 1.4. 피추천인은 선거가 개최되는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추천

- 2.1. 피추천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
 - 2.1.1. 회원국이 보증한다. 세계양궁연맹 사무국은 선거가 치러지는 세계 선수권대회의 첫날이 되기 30일 전까지 서면 추천서를 수령한다.
 - 2.1.2. 선거 시점에 연령이 최소 18세 이상이다.
 - 2.1.3. 피추천인이 대표하기를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자신의 추천과 함께 알린다.

투표

- 3.1. 세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 한해 투표권이 주어진다.
- 3.2.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 3.3. 각 선수는 자기의 카테고리에서 추천된 대표에게 투표한다(즉, 여자 컴파운드 아처는 여자 컴파운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양궁연맹 선수권대회에서 각 카테고리 당 1인의 위원회 위원을 투표하며, 2인의 여성 위원과 2인의 남성 위원이 선출된다.
- 3.4. 가능할 시, 각 카테고리의 최소 후보 수는 2인 이상이다. 후보 1인만 있는 경우, 그 카테고리에서 발생하는 기권을 포함하여 50%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후보가 50% 미만을 득표할 경우, 다른 모든 카테고리에서 얻은 표 중 가장 찬성 비율이 높은 1위 비선출 후보가 선출된다.
- 3.5.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권대회와 세계 양궁 필드 선수권대회에서 선수는 카테고리 제한 없이 투표한다.
- 3.6. 선거에서 표결이 나지 않을 경우, 동점표를 얻은 후보와 상의하여 선거 위원회가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3 / 49

도박과 부패방지

서문

- 1.1. 스포츠의 청렴성은 관련 참가자의 경기 평점에 전적으로 근거한 스포츠 대회와 경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스포츠 대회의 청렴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모든 형태의 부패는 근본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반하며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 1.2. 세계양궁연맹은 (i) 대회의 결과와 경기 결과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금지하고, (ii) 부패한 행동으로 인해 스포츠의 청렴성을 침해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 및 강제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양궁 스포츠의 청렴성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본 규정들(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채택했다.
- 1.3. 세계양궁연맹은 세계양궁연맹의 권한 내에서 양궁 스포츠의 청렴성을 침해하는 부패 실행을 방지하는 현실적 조치를 취한다. 그 조치에 다음이 포함된다.
 - (a) 최대한 넓은 범주의 대중에게 교육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및(또는) 적절하게 조정된 교육 프로그램 및 도구의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수준에서 본 규정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 (b)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도박 패턴 감시를 포함하여 국제 대회에서 도박하는 스포츠 감시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만든다.
 - (c) 가령 정보 '핫라인'을 구축하여 기밀로 제3자 정보를 수령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을 만든다.
 - (d) 본 규정 하에 위반에 대한 조사 및 (또는) 고발과 관련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효과적인 채널을 만들고 이용한다.
 - (e) 세계양궁연맹이 가진 정보가 기타 준거법 또는 규정 위반을 증거하거나 침해에 달하는 경우, 해당 국내 및 외국 당국과 협력한다.
 - (f) 스포츠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신정된 분야에 대해 올림픽 운동본부의 파트너와 정보를 교환한다.

적용 및 범위

- 2.1. 본 규정은 국제 대회에 참여하고 국제 대회에서 지원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각 참가자는 그들의 참가 또는 지원으로 인해 자동으로 본 규정의 구속을 받고 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 2.2. 모든 참가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본 규정을 인식하고, 이 요건들을 준수할 개인적이 책임이 있다. 참가자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금지된 행동이 형사상 범죄 및(또는) 기타 준거법과 규정 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가자는 준거법과 규정 일체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
- 2.3. 각 참가자는 세계양궁연맹이 하는 기소를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 독점 관할지의 징계 및 윤리 위원회에 복종하며,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항소에 대해 판결하는 독점 관할지의 CAS 에 복종한다.
- 2.4. 각 참가자가 최종적으로 참여하거나 경기에서 보조한 후 또는 그 참가자가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위를 유지한지 6개월째 되는 날까지 각 참가자는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각 참가자는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진행되는 경기에 참여하거나 그 경기에서 보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본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 2.5. 회원국이 회원국의 각 관할 하에 개최되는 경기의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한 규칙과 규정을 두는 것이 권장된다.
- 2.6. 관련된 회원국에 통지문을 전달함으로써 회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참가자에게 본 규정에 의거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회원국은 통지에 해당되는 참가자와 즉시 연락할 책임이 있다.

규정 위반

3.1. 다음 행동은 본 규정의 위반에 해당한다(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실행되는지 상관없이 각 경우에).

도박:

- (a) 대회 또는 경기 점수, 경과, 결과, 행동 또는 기타 양상에 대해 타인과 내기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회 또는 경기(참가자가 직접 참가하거나 참가자의 스포츠 안에서 치러지거나 또는 참가자가 참가하는 주요 대회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국제 대회의 기타 스포츠에서 치러지는)와 관련한 모든 종류의 내기에 참가하거나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b) 본 규정에 기재된 위반 행위를 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촉진 또는 권장하는 행위

3.2. 결과 조작

- (a) 어떤 방식으로든 혹은 기타 방법으로 혹은 대회나 경기의 결과, 진행 과정, 행동 또는 다른 면에서 고치거나 짜맞추거나 달리 한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 (b) 참가자가 아는 한 내기의 대상이 되며 자신 또는 타인이 이익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거나 이익을 수령한 특정 사건이 대회 또는 경기에서 발생하도록 보장하거나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행위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4 / 49

- (c) 이익(또는 해당 이익의 사실 상 제공 또는 수령 여부에 상관 없이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에 대한 대가로 대회 또는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행위
- (d) 본 규정의 3.2에 따라 위반을 범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촉진 또는 권장하는 행위

3.3. 부패 행위

- (a) 대회나 경기의 결과, 진행 과정, 행동 혹은 기타 양상을 부적절하게 고치거나 꾀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도록 뇌물 또는 기타 이익(또는 해당 이익의 사실 상 제공 또는 수령 여부에 상관 없이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을 수령하거나 제공하거나 수령 또는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행위
- (b) 합당하게 참가자가 자신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예상한 선물이나 이익 혹은 참가자 자신 또는 스포츠를 오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물이나 이익을 제공, 부여, 요청하거나 수령(또는 해당 이익의 사실 상 제공 또는 수령 여부에 상관 없이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기대)하는 행위
- (c) 본 규정의 3.3에 따라 위반을 범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촉진 또는 권장하는 행위

3.4. 내부 정보

- (a) 도박 목적으로 또는 기타 도박과 관련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b) 정황 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박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음을 참가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익을 갖거나 갖지 않은 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c) 본 규정의 3.4에 따라 위반을 범하도록 참가자를 유도, 지시, 촉진 또는 권장하는 행위

3.5. 기타 위반

- (a)참가자가 다른 자와 본 규정 3항 위반을 저지르는 것을 초래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합의 또는 시도는 실제로 본 규정 3항 위반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시도나 합의에 대한 참가자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참가자가 시도나 합의에 연루되지 않은 제3자가 발견하기 전에 참가자의 시도나 합의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 본 규정 3항에 의거한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b)참가자가 저지른 규정 3항에 따른 유형의 행위나 태만을 고의적으로 돕거나 은폐하거나 기타 공모하는 행위
- (c)본 규정에 기재된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사건에 연루되기 위해 참가자가 받는 접근이나 초대의 완전한 내용을 참가자가 (지연 없이) 세계양궁연맹 또는 기타 해당 당국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
- (d) 다른 모든 당사자가 본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행동에 연루되도록 받은 접근 또는 초대를 포함하여(제한 없이) 제3자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실, 즉 참가자의 주의를 끌게 되는 사건이나 사실 또는 일에 대한 전적인 내용을 참가자가 (지연 없이) 세계양궁연맹 또는 기타 해당 당국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
- (e) 조사와 관련되는 세계양궁연맹 또는 해당 경기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 및(또는)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한 본 규정 위반에 대해 다른 해당 관할 당국 또는 세계양궁연맹이 합당한 조사를 수행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행위
- 3.6. 다음은 본 규정 위반 판정과 관련이 없다.
 - (a) 참가자의 참가 여부 또는 특정 대회나 경기에서 다른 참가자가 돕는 참가자가 경기에 참가하고 있었는지 여부
 - (b) 문제가 되는 도박의 성질이나 결과
 - (c) 도박이 행해지는 대회 또는 경기의 결과
 - (d) 문제가 되는 대회나 경기에서 (해당 시) 참가자의 노력이나 성적이 문제가 되는 행위 또는 태만에 영향을 미침(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
 - (e) 문제가 되는 대회 또는 경기의 결과가 문제가 되는 행동이나 태만의 영향을 받음(또는 그 가능성)

입증 책임 및 기준

- 4.1 세계양궁연맹 또는 기타 기소 당국은 본 규정 하에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증거의 기준은 세계양궁연맹이나 기타 기소 당국이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위반을 입증한다. 그 기준은 합당한 의심의 수준을 넘는 증거보다는 부족하지만 단순한 확률의 균형보다 훨씬 낮다.
- 4.2. 본 규정이 사실이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되는 참가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경우, 증거가 입증 기준에 우선한다.
- 4.3.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입증 능력을 지배하는 사법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시인, 제3자의 증거, 증인의 진술, 전문가 보고서, 증거 문서 및 기타 분석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뢰성 있는 수단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 4.4.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판정이 당연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참가자가 확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정이 연관된 참가자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서 미결인 항소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당 관할 구역의 전문 징계 심사 위원회의 판결로 확립된 사실을 받아들일 재량권을 갖는다.
- 4.5.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심리 전에 합당한 시간에 출두를 요청하였으나 그 참가자가 징계 및 윤리 위원회에 출두하지 않거나 본 규정에 따라 제출된 정보 요청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참가자에 대해 불리한 추론을 할 권리가 있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5 / 49

위반행위 조사

- 5.1. 본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거나 그렇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은 규정 5항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의 사무총장에게 보고되어 조사 또는 기소될 수 있다.
- 5.2. 세계양궁연맹은 본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역할 수행을 위해 1인 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조사는 해당 관할 국가 당국이나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실시될 수 있고(형사 당국, 행정 당국, 전문적 및(또는) 사법 당국 포함), 모든 참가자는 조사에 완전히 협력해야 한다. 세계양궁연맹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타 관할 당국이 조사결과를 실시하는 동안 자기재량으로 자체 조사를 유지할 수 있다.
- 5.3. 그러한 조사의 일부로 세계양궁연맹이 합당하게 참가자가 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세계양궁연맹은 그 참가자에게 혐의가 있는 위반에 대한 정보를 서면 요청하고(하거나), 인터뷰에 참가자가 출석할 것을 요청하거나 두 가지 다 요청할 수 있다. 세계양궁연맹이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가 진행되며 해당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적절한 서면 통지문을 발송한다. 인터뷰는 녹음되며 참가자는 통역사 및 변호사를 동행할 권리가 있다.
- 5.4. 경기에 참가함으로써 각 참가자는 해당 정보 보호법 및 기타 법의 목적에 동의하고 기타 제반 목적으로 본 계약 규정에 의거하여 허용된 범위까지 참가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제한 없이) 수집, 처리, 공개, 기타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각 당사자는 그 요구에 서면으로 동의를 확정해야 한다.

기소 통지문 발행

- 6.1. 조사 이후 세계양궁연맹은 규정 3항에 의거하여 참가자가 답변할 사건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자에게 다음이 기재된 서면 기소 통지문을 발행한다.
 - (a) 참가자가 저지른 혐의가 있는 특정 위반
 - (b) 그 혐의가 근거하는 사실
 - (c) 해당 위반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가능한 징계의 범위
 - (d) 특정 기한 내에 기소 통지문에 참가자가 대응하는 것과 관련한 상세 내용
 - (e) 심리를 통해 문제가 결정되게 할 참가자의 권리
- 6.2. 참가자가 심리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희망할 경우 세계양궁연맹이 가능한 한 빨리 수령하되 기소 통지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수령하도록 참가자가 서면 요청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소 통지문에 명시해야 한다. 참가자가 기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그 요청서에 기재하고 그 대응의 기본을 (요약된 형태로) 설명해야 한다.
- 6.3. 참가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심리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참가자는 다음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a) 심리에 대한 참가자의 권리 포기
 - (b) 참가자가 기소 통지문에 명시된 위반을 한 점을 인정
 - (c) 기소 통지문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징계의 범위 동의
- 6.4. 참가자가 규정 6.2에 따라 심리를 요청할 경우, 그 문제는 규정 7항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다. 참가자가 심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규정 6.3에 따라 위반을 시인한 경우, 심리는 적용 가능한 징계 결정에만 국한된다.
- 6.5. 세계양궁연맹이 참가자를 본 규정들에 의거하여 위반으로 기소할 경우, 세계양궁연맹은 스포츠의 청렴성이 달리 심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자기 재량으로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참가자가 위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미결 기간 동안 참가자의 참가를 조건부로 정지시킬 수 있다. 본 규정에 따라 참가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조건부 정지가 실행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참가자는 경기의 자발적인 중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단, 참가자는 세계양궁연맹에 서면으로 그것을 확정해야 한다. 자발적인 중지는 세계양궁연맹에 참가자가 보낸 서면 확정서를 세계양궁연맹이 수령한 날부터 발효된다.
- 6.6. 참가자에게 조건부 중지를 부과하는 결정은 항소 대상이 아니다.
- 6.7. 본 규정 하에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가 은퇴하는 경우, 세계양궁연맹과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해당 절차를 완료할 관할권을 유지한다. 참가자가 징계 절차 시작 전에 은퇴하는 경우에도 상관 없이 세계양궁연맹과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해당 절차를 수행할 관할권을 갖는다.

공정한 청문회에 대한 권리

- 7.1. 참가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세계양궁연맹이 주장하였으나 참가자가 그 혐의를 부인하고(또는) 그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징계에 대해 판결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 그 문제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앞에서 실시되는 심리에 회부된다.
- 7.2. 심리 절차는 다음 원칙을 존중한다. 적시 심리,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징계 및 윤리 위원회, 변호사가 대변하는 권리(참가자의 비용으로), 주장된 부패방지 규정 위반과 초래되는 징계의 범위에 대해 응답할 권리, 증인을 불러서 질문할 각 당사자의 권리(징계 및 윤리위원회의 재량으로 전화나 서면 제출물을 통해 증거를 받을 수 있음), 심리에서 참가자가 통역사에 대해 갖는 권리(징계 및 윤리위원회가 통역사 비용에 대한 책임과 신원 확인을 결정), 징계 부과 사유 설명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적시에 논리 정연하게 기록한 결정무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6 / 49

- 7.3. 당사자가 각자의 제출물을 제출한 후,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위반 사실을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작성하기를 희망하는 문제에 대한 제출물을 고려한 후에 1권, 1.15.2항에 기재된 바에 근거하여 적절한 징계를 정한다.
- 7.4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심리 종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결의문을 발행한다. 결의문에 다음을 정하여 설명한다.
 - (a) 참가자가 위반을 범했는지 여부에 대한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결의
 - (b) 징계가 시행될 경우 부과될 징계에 대한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결의
 - (c) 무자격 기간 시작일
 - (d) 규정 9항에 따른 항소권

징계

- 8.1. 참가자가 위반을 범했다고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판정할 경우,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1권 1.15.2항에 정해진 바에 근거하여 적절한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규정 8.1항에 따라 무자격 기간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악화 요인 및(혹은) 경감 요인(규정 8.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권한이 있다.
 - (a) 징계 기간은 징계 및 윤리 위원회의 결의가 참가자의 적용 가능한 회원국에 발행되는 날에 시작되고 적용 가능할 경우 발행된 결의문에 기재된 날에 종료된다.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결정문이 도달하기 전에 자기재량으로 참가자에게 이미 집행된 조건부 정지 기간으로 부과된 무자격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b) 참가자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부과한 무자격 기간에 어떠한 대회나 경기에 어떠한 역할로도 참가할 수 없다.
 - (c) 참가자가 규정8.1항에 따라 부과된 참가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그 참가자는 해당 대회 또는 경기부터 즉시 자격을 상실하며 이 규정에 따라 원래 부과된 무자격 기간이 그 위반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 (d) 본 규정은 무자격인 참가자에게 계속 적용되며, 무자격 기간 동안 참가자가 범한 위반은 명백한 위반으로 취급되고 본 규정에 따라 참가자에게 별도로 소송이 제기된다.
- 8.2. 악화 요인 및(혹은) 완화 요인
 - (a) 규정 8에 따라 징계 부과 시, 징계 및 윤리 위원회는 악화 요인 및 완화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권한이 있다.
 - (b)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악화 요인에(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이 포함된다.
 - (i) 참가자 조사 또는 정보 요청에 비협조
 - (ii) 참가자가 이전에 범한 위반
 - (iii) 위반과 관련하여 상당한 혜택을 받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참가자
 - (iv) 대회 또는 경기의 결과나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위반
 - (v)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참가자(가령, 세계양궁연맹이 구성하는 부패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포함)
 - (vi)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악화 요인
 - (c)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완화 요인에(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이 포함된다.
 - (i) 참가자 조사 또는 정보 요청에 협조
 - (ii) 참가자의 죄에 대한 적시 인정
 - (iii) 참가자의 깨끗한 징계 기록
 - (iv) 참가자가 유소년이거나 무경험.
 - (v) 대회나 경기의 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줄 가능성이 없는 위반
 - (vi) 반성하는 모습의 참가자(가령, 세계양궁연맹이 구성하는 부패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동의하는 태도 포함)
 - (vii)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기타 완화 요인

항소권

- 9.1. 규정 9항에 따라 관할하는 판결의 대상인 참가자와 세계양궁연맹은 CAS(스포츠 중재재판소)에 독점적으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하는 다음 판결을 항소할 수 있다.
 - (a) 본 규정 위반에 대한 기소가 절차상 또는 사법적 이유로 기각된다는 판결
 - (b) 위반을 범했다는 판결
 - (c) 위반을 범하지 않았다는 판결
 - (d) 본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징계를 포함하여 징계를 부과하는 판결
 - (e)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판결
 - (f) 오류이거나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기타 판결
- 9.2. 항소 당사자가 판결문을 수령하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CAS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 9.3. CAS가 달리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절차의 적용을 받는 동안 부과되는 징계와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 9.4. CAS의 판결은 최종이며 당사자 전부 및 회원국 전부에 구속력이 있고 CAS 판결에 근거한 항소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7 / 49

재판소, 징계 심사 위원회 또는 기타 분쟁 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통한 어떠한 주장도 제기될 수 없다.

결의 인식

- 10.1. 세계양궁연맹은 모든 회원국이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부과된 모든 결의와 징계를 준수하고, 인식하며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모든 적절한 단계를 통해 강제하고 실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10.2. 위의 통지문을 수령한 후 세계양궁연맹은 주요 대회 조직 위원회의 관할구역 내에 있고 본 규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도박 및 부패 방지법에 근거하는 최종 판결, 즉 참가자와 관련한 주 대회 조직 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주 대회 조직 위원회가 부과하는 징계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의 징계 판결이 관련되어 있는 한 본 규정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이 징계 절차를 결정한다.

제한 규정

- 11.1.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그 조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본 규정 위반에 대해 참가자를 상대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치도 시작될 수 없다.
- 11.2. 위 규정 11.1에 따라 세계양궁연맹은 관련 당국이 동일한 문제 혹은 관련 문제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고(또는) 그 조사를 우선시하기 위해 본 규정에 의거한 모든 조사를 임시로 중지할 수 있다.

수정과 해석

- 12.1. 세계양궁연맹의 운영 위원회는 본 규정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 12.2. 도박 및 부패 방지 규정은 그 성질에 따라 양궁 스포츠가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지배하는 경기 규정이다. 도박 및 부패 방지 규정은 형사 소송절차 또는 고용 문제에 적용 가능한 요건과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거나 그것들의 제한을 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양궁 스포츠에서 부패에 대한 투쟁의 기본으로서 본 규정에 기재된 정책과 기준은 공정한 스포츠에서 이익을 가진 자의 광범위한 의견일치를 대변하며 법원 및 판결 기관 전체가 이 정책과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 12.3. 본 규정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문장으로 해석되며, 기존 법률 또는 법령을 참조하여 해석되지 않는다.
- 12.4. 본 규정의 제목과 부제는 편의상으로만 기입되며, 본 규정의 핵심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제목과 부제가 관련되는 조항의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2.5. 부록 1의 정의는 본 규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 외에 세계양궁연맹의 헌장에서 사용되는 정의로도 간주된다.
- 12.6. 본 규정의 남성을 지칭하는 모든 표현에 여성도 포함된다.
- 12.7. 본 규정의 조항 또는 어떤 다른 규정이 어떤 이유로든 무효하거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인 경우, 그 조항이나 규정은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 외의 규정은 완전히 시행되며 유효하다.
- 12.8. 본 규정은 세계양궁연맹 상임이사회가 채택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완전히 시행 및 발효된다.

정의

- 13.1. "선수"는 대회 또는 경기에 참가하도록 선발된 선수 또는 참가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 "선수 지원 인력"은 코치, 훈련자, 매니저, 선수 대표, 대리인, 팀 스태프 멤버, 임원, 의료 인력 또는 준의료 활동 인력, 가족 또는 기타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선수의 회원국이 고용하거나 함께 일하는 자를 의미한다.
 - "이익"은 금전 또는 금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 혹은 제공(관련 행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지지 계약, 스폰서 계약 또는 기타계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상금 및(또는) 계약금 지불 제외).
 - "도박"은 돈내기 또는 기타 유형의 금전 투기를 의미한다.
 - "도박 행위"는 도박을 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판돈을 놓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 및 러닝 오즈 베트, 토털라이제이터(totalisator) 게임 및 토토 게임, 온라인 라이브 베팅, 베팅 거래, 스프레드 베팅, 및 기타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임 등 스포츠 베팅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CAS"는 스위스 로잔(Lausanne)에 소재하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의미한다.
 - "대회"는 한 운영 기관(예: 세계 선수권대회)의 주최 하에 1일 이상 진행되는 경기 혹은 연속되는 경기를 의미한다.
 - "경기"는 싱글, 레이스, 매치 또는 컨테스트를 의미한다.
 - "내부 정보"는 참가자가 스포츠 경기 중 본인의 지위로 인해 습득하는 대회 또는 경기와 관련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경쟁 선수, 조건, 전략적인 고려 사항 혹은 기타 대회 또는 경기의 양상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대회 또는 경기를 지배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공개되거나 이해 관계가 있는 대중의 구성원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공문서 혹은 이미 게시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주요 대회 조직위원회"는 모든 대륙 경기, 지역 경기 혹은 기타 국제 경기를 주관하는 국제 복합 스포츠 조직을 의미한다.
 - "참가자"는 선수, 선수 지원 인력, 심판, 레퍼리(referee), 대표, 위원, 상소심판원, 대회 임원, 회원국 팀 또는 대표 회원 및 기타 인정된 자를 의미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8 / 49

"개인"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협회 및 파트너십을 포함한다(별도의 법인격 여부에 상관없이).
"징계"는 징계 및 윤리 위원회가 본 규정서의 규정 8항에 따라 부과할 권리가 있는 징계를 의미한다.
"위반은 규정 3항에 따른 본 규정서 위반을 의미한다.

버전 2020-01-15 17:30:34 페이지 49 / 49